

경기도외국인정책 간담회 및 지원단체 활동가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2013년 11월 26일(화) ~ 27일(수)
용인롯데인재개발원

경기도외국인정책 간담회 및 지원단체 활동가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2013년 11월 26일(화) ~ 27일(수)
용인롯데인재개발원

C O N T E N T S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소개 _08

오경석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소장)

발제 _22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정책의 현황과 정책제언

: 외국인인권의 기호학적 접근

박천응 (안산이주민센터 대표 · 인하대학교 겸임교수)

정책 간담회 Ⅰ

재외 동포정책의 현황과 전망 (경기도를 중심으로)

1 국내체류 고려인동포에 대한 정책방향 _44

이천영 (고려인마을 협동조합 이사장)

2 중국동포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 _51

이정혁 (안산외국인노동자의집 · 중국동포의집 소장)

3 패널 토론 _63

- 김용선 (한중문화컨텐츠연구소 소장)
- 양한순 (아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정책 간담회 Ⅱ

이주아동의 현황과 정책(경기도를 중심으로)

1 이주아동의 인권현황과 정책과제 _76

신은주 (평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 패널 토론 _100

- 신상록 (함께하는 다문화네트워크 이사장)
- 김승력 (고려인 야학 너머 대표)
- 강은이 (안산 we start 글로벌아동센터장)

일정표



일시	시간	소요(분)	주제
11/26 (화)	14:40~15:00	20	등록 및 인사
	15:00~15:20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소개 - 발표 : 오경석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소장)
	15:20~15:40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정책의 현황과 정책 제언 (외국인인권의 기호학적 접근) - 발제 : 박천응 (안산이주민센터 대표 · 인하대학교 겸임교수)
	15:40~15:50	10	휴식시간
	15:50~17:50	1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외 동포정책의 현황과 전망 (경기도를 중심으로) - 사회 : 박우 (한성대학교 교양교직학부 교수) - 발제 : 국내체류 고려인동포에 대한 정책방향 이천영 (고려인마을 협동조합 이사장) 중국동포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 이정혁 (안산외국인노동자의집 · 중국동포의집 소장) - 주 토론 : 김용선 (한중문화컨텐츠연구소 소장) 양한순 (아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자유 토론
	17:50~18:00	10	휴식 시간
	18:00~21:00	180	● 저녁식사 및 교류의 장
11/27 (수)	10:00~11:30	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아동의 현황과 정책 (경기도를 중심으로) - 사회 : 김성천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발제 : 신은주 (평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주 토론 : 신상록 (함께하는 다문화네트워크 이사장) 김승력 (고려인 야학 너머 대표) 강은이 (안산 we start 글로벌아동센터장) - 자유 토론
	11:30~11:40	10	휴식 시간
	11:40~12:00	20	평가 및 정리



경기도외국인정책 간담회 및
지원단체 활동가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소개



오 경 석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소장)



1. 경기도지자체외국인정책 모니터링

필요성

- 인권 친화적인 행정 패러다임의 구축
- 외국인 정책의 효율성과 민주성 제고 및 극대화
- '외국인 주민 차별 해소 및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 실천' 분야 실행 강화
- 국제 사회에 부합하는 인권 친화적인 외국인 정책 준거의 틀 마련

사업내용

- 경기도 지자체 정책 담론 분석
- 경기도 지자체 담당 공무원 면담 조사



■ 경기도지자체외국인정책 모니터링

● 추진 실적

번호	일자	지자체	내용
1	2013.06.03	시흥시	외국인 지원 업무의 어려움 (추진체계, 인력, 예산, 프로그램) 및 개선 방안
2	06.10	용인시	
3	06.17	안산시	
4	06.25	화성시	
5	07.01	오산시	
6	07.09	성남시	
7	07.09	수원시	
8	07.12	김포시	
9	07.15	오산시	

● 추진 성과

면대면 조사를 통해 각 지자체의 추진체계, 주요사업과 예산, 사업 추진에 있어서의 애로점 파악
중앙 정부 및 경기도에 바라는 점 등 구체적으로 파악
향후 정책 및 업무 체계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 확보와 신뢰 및 협조 체계 구축



■ 경기도지자체외국인정책 모니터링

● 조사 결과

범주	내용	효과	과제
추진체계	중앙 정부 중심의 일방적 사업 하달	행정 낭비와 업무 과다	보조금 직접 지원
	단체장과 의사결정자들의 인식	정치적인 수사	예산과 조직 지원
사업내용	천편일률적인 프로그램	낮은 참여율과 만족도	지역 친화적인, 단계별, 통합 프로그램
	새로운 시설 설립 중심	예산 낭비, 효과 검증 안됨	사업 지속성 관리와 사후 지원
	단기적인 미봉책		실태조사의 필요성 중장기적인 비전
	정책대상의 편향성	중복 수혜와 누락	정책포괄성 계고 필요성 : 외국인근로자, 미등록체류자 및 그 자녀
	분리주의	사회적 고립	시민의 다문화 인식 개선
종사자	일방적인 순환근무제	업무의 비일관성	전담관계 혹은 전보제한
	격무 부처	종사자 금지 저하	근평과 인센티브 개선 역량강화 기회 제공
	고위직의 마인드	다문화 업무의 독자성 불인정	독립적인 업무 영역 인정

2.외국인근로자가족인권상황실태조사

● 필요성

정책의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는 도내 외국
인근로자 가족 실태조사

인권 및 생활 실태를
중심으로 진행된
전국 최초의 조사

실태조사를 통해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 자료 확보

외국인 인권 선도
지자체로서의 경기도
위상 강화

● 조사내용 및 추진방법



5

■외국인근로자가족인권상황실태조사

추진방법

내부 워크숍
3회,
외부 전문가
자문 3회

예비 조사
2회

도내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
가족 168명
설문조사 실시

가정 방문조사
2회

6

추진성과

외국인근로자
가족 설문지
168부 수거 및 분석

외국인근로자
가족 지원 정책 마련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근로자 가족의 인권
및 생활 실태의 공문화화를
통해 외국인 인권 선도
지자체로서의
경기도 위상 강화 및
이미지 제고



3. 외국인 및 다문화 업무 공무원 인권의식 조사

필요성

외국인 및 다문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인권 의식 및 감수성에 대한
전국 최초의 실태조사

타 시도에 모범이 되는 공무원 인권의식
향상 방안 마련 및 선진 외국인 정책
경기도 구현을 위한 근거 마련

조사내용 및 추진방법

조사 내용

- 일반적 배경
- 한국사회의 일반적인 인권수준에 대한 인식
-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상황에 대한 인식
- 결혼이주여성 인권수준 및 인식
- 외국인 주민에 대한 사회 경제적 인식
- 인권교육 경험 및 인권교육에 관한 의견
- 업무 체계와 방식에 관한 질문

■ 외국인 및 다문화 업무 공무원 인권의식 조사

추진방법

내부 워크숍 3회, 외부 전문가 자문 3회

경기도 다문화가족과를 통해 31개 시·군에 설문 협조 공문 발송

추진성과

이주관련 분야별
이슈에 대한 담당
공무원들의
인식 파악

업무체계와
인권의식간
상관관계를 파악

인권의식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발간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9

4. 인권교육 -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월레포럼

필요성

- 공무원 및 민간단체 종사자의 인권 감수성 향상
- 다문화 감수성 향상과 업무의 전문성 강화에 기여

추진 성과

- 공공 및 민간부문 인터페이스 종사자의 인권감수성 및 다문화 감수성 향상 계기 마련

사업내용

- '이주, 다문화, 소수자, 인권'을 주제로 교육
- 소규모 토의 방식을 통한 교육 참여자 주제적 교육환경 조성
- 국내외 외국인, 다문화 전문 연구자 초청 강연
- 소수자, 인권 분야 민간단체 전문가 초청 강연

추진 실적

- 총 8회 / 91명 참여

10

5. 다문화인권교육 : 동화와 함께하는 다문화 인권 이야기

● 필요성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친숙한 동화를 통해 다문화 인권 친화적 가치를 발견

외국인 주민의 삶을 폭넓게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

외국인 주민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해소하고, 다른 인종, 종교, 문화를 존중하는 사회분위기 조성

● 교육내용

유명 전래동화 “미녀와 야수”, “인어공주”의 다문화 친화적 해석을 통한 다문화적 가치 발견

“하이드”, “엄마 찾아 삼만리”를 통해 이주아동 등 이주민의 다양한 삶을 폭넓게 이해

11

■ 다문화인권교육 : 동화와 함께하는 다문화 인권 이야기

“툼 소녀의 모험”, “피노키오의 모험”을 통해 학교와 아동 인권의 관계를 이해하고, 인권친화적인 교육의 의미를 생각하는 계기 마련

“허클베리 핀의 모험”, “앵글 톰스 캐빈”을 통해 노예 제도 폐지와 인권신장, 인권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 마련

다문화 인권 친화적인 독서 지도 활용

● 추진성과

도내 9개
시립도서관에서
20회 실시,
406명 수강

다문화
인권 교육을
동화를 매개로
지역도서관에서
실시

내국인 교육
참여자들의
교육기대와
만족감을 충족

12

6.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

● 필요성

외국인근로자 및 민간단체 상담전문가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기본법 교육을 실시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권 이해를 돕고, 민간단체 상담전문가의 업무 역량 강화에 기여

● 사업 내용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법 등 노동기본법 교육

고용허가제법 주요 내용 교육

민간단체 실무자를 대상으로 노동기본법 강의 및 사례분석

13

■ 추진성과

외국인 근로자 대상 교육
12회(6개국, 5개 지역), 총
267명 참가

민간상담전문가 및 통역원
대상 교육 2회
(경기북부, 화성),
총24명 참가

다년간 외국인
근로자 상담을
전문으로 담당한
공인노무사가 외국인
근로자의 생활리듬에 맞춘
일요 순회 교육을 진행

전문강사를
초빙하기 어려운
여건의 민간단체에
전문 강사를 파견하여
민간단체와의 협력 계기
마련



14

7. 외국인근로자 고용주 교육 및 매뉴얼 발간

● 필요성

산업인력공단의 지역
고용주를 대상 집합 교육
참여하기 어려운 현실

소관부처에서 발행하는
고용주 대상 안내서는 최신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고,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로 구성

최근 정책 변동 사항이
반영되고, 일반인이
친숙하게 볼 수 있는 매뉴얼
발간

● 사업내용

◦ 도내 상공회의소와 연계하여 외국인
근로자 고용주 대상 교육 진행

◦ '외국인근로자 고용주를 위한
노무관리매뉴얼' 제작 배포

◦ 교육내용 : 근로기준법 등 노동기본법,
고용허가제법 강의

◦ 매뉴얼 내용 : 고용허가제 절차,
출입국관련절차, 핵심 노동기준법 등

15

■ 외국인근로자 고용주 교육 및 매뉴얼 발간

● 추진실적

외국인근로자
고용주를 위한
노무관리 교육

일시 :
2013. 11. 19.
오후 3-5시

장소 :
안성상공회의
소 대회의실

참가인원 :
29명

『외국인근로자
고용주를 위한
노무관리
매뉴얼』 제작
및 배포 :
12월 초

● 기대효과


◦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의 갈등 및 인권침해 예방

16

8. 인권 상담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외국인 근로자 및 주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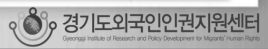
추진 실적

- 총 상담 65건(동일 건에 대한 누계 제외), 외국인 122명 지원




추진 성과

- 실제적인 상담접수와 대응을 함께 수행함으로써 인권지원단체로서의 1차적인 역할 수행
- 센터활동가들에게 법적 해석, 자문을 통해 상담의 확산효과 극대화
- 출석 및 동행을 통하여 실제적인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성실·책임 상담 수행




9. 외국인근로자 인권침해예방 모니터링단 운영




필요성


- 외국인근로자 및 외국인 주민 당사자를 모니터링 요원으로 참여
- 사업장 및 생활 세계 인권 현실에 대한 구체적이며 신뢰성 높은 정보 확보



사업내용


- 외국인근로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인권침해 상황에 대하여 이주민 모니터링 요원이 직접 체크
- 이주민 인권실태에 대하여 조사






추진 성과

- 경기도내 외국인근로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곳(안산, 화성 등 11개 지역)을 설정
- 외국인근로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얻는 결과지를 수집함



추진 실적

- 10개국 출신 10명의 모니터링 요원이 107명의 외국인근로자를 면담



10. 외국인 인권침해 예방 토론회

● 필요성

각 분야별 외국인 인권 상담 활동가들이 모여 외국인 권리침해의 유형 및 경향을 파악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정책 제언

● 사업내용

2013년 8월 29일 '외국인인권침해예방 토론회' 개최



19

■ 외국인 인권침해 예방 토론회

● 추진성과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이주아동, 난민 분야에 대하여 경기도내 현장 활동가의 발제 및 토론

참석인원 : 75명

경기도내 이주민 지원단체들의 상담현황 및 전문분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향후 경기도가 추진 가능한 시책 제언

한자리에 모이기 힘든 각 분야별 이주민지원 상담 활동가들이 함께 모여 이주민 정책에 대한 논의의 장을 성공적으로 마련

20

11. 시민사회 협력체제 구축 - 외국인복지센터 기관장 간담회

첫 번째

필요성

- 지역친화적인 이주 의제 발굴
- 이주민지원단체간 및 민관협력 체제 구축
- 외국인복지센터 활성화를 통한 이주민 지원 사회안전망 강화



두 번째

사업내용

- 도내 7곳의 외국인복지센터 센터장들의 정책간담회 정례화
- 각 지역 이주민 및 지원 활동(정책과 프로그램, 지원단체, 스포츠 동아리) 현황 조사 및 공유
- 센터장과 각 지역 공공 부문 종사자들과의 라운드 테이블- 합동 포럼 개최



세 번째

추진실적

- 정책 간담회 6회 개최
- 지역별 다문화 서비스의 현황 및 평가 조사 보고서 4부(김포, 화성, 안산, 남양주)
- 정책 개발을 위한 지역별 이주민 스포츠 동호회 현황 자료(안산, 김포, 성남, 수원, 의정부, 남양주, 화성, 경기북부) 수집



21

■ 시민사회 협력체제 구축 - 외국인복지센터 기관장 간담회

네 번째

추진성과

- 도내 7개 외국인복지센터 기관장들의 모임 정례화
- 이주민인권친화적인 지역사회 형성이라는 주제로 경기도 전체의 이주민 지원 활동 활성화 방안을 모색
- 지역 이주민 현황 및 지원 활동 실태에 관한 구체적인 지식을 생산하고 공유



22

12.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다문화정책 심포지움

다문화정책심포지움 - 외국인근로자가족의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 필요성

● 사회통합의 중요한 고려대상인 외국인근로자 가족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

● 중앙 정부의 정책 개선을 견인하고, 다문화 정책 선도지자체로서의 경기도의 위상을 공고히 함

23

■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다문화정책 심포지움

● 행사개요

일시 : 2013년 12월 17일 오후 2시



장소: 안산글로벌 다문화센터 대강당(4층)

주최: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13. 언론 보도 및 방문자(11월 현재)

1. 언론보도

- 방송: KBS, MBN 등 총 7건
- 신문: 경향, 중앙일보 등 총 109건



2. 방문자 (총 64건, 161명 방문)

- * 목적별 방문자 현황
- 업무협력: 21건
- 인터뷰: 7건
- 사업자문: 9건
- 센터방문: 27건



13. 언론 보도 및 방문자(11월 현재)

1. 언론보도

- 방송: KBS, MBN 등 총 7건
- 신문: 경향, 중앙일보 등 총 109건



2. 방문자 (총 64건, 161명 방문)

- * 목적별 방문자 현황
- 업무협력: 21건
- 인터뷰: 7건
- 사업자문: 9건
- 센터방문: 27건



경기도외국인정책 간담회 및
지원단체 활동가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발 제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정책의 현황과 정책제언
: 외국인인권의 기호학적 접근



박 천 응

(안산이주민센터 대표 · 인하대학교 겸임교수)

기호학과 다문화이주인권



2013. 11.26.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교육

주제강연: 박 천 응(다문화학 Ph.D)
안산이주민센터 대표. 인하대 겸임 교수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게 만드는



생각의
오류

Don't Believe Everything
You Think

인간동물원: 호주 원주민은 1960년대 까지 동물로 분류되었다.



줄리아 파스트라나(Julia Pastrana, 1834년 ~ 1860년)는 다모증을 앓던 여성으로 19세기에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속칭 '괴물 쇼'로 불렸던 기형적으로 생긴 인간들을 전시하여 재미의 대상으로 삼았던 전시회에 팔려 다녔던 여성이다. 멕시코 원주민 태생, 뉴욕 타임스에는 '인류와 오랑우탄의 중간 고리'라는 혐오스러운 광고로 나오기도 했다.



과학적 인종차별주의

다윈의 진화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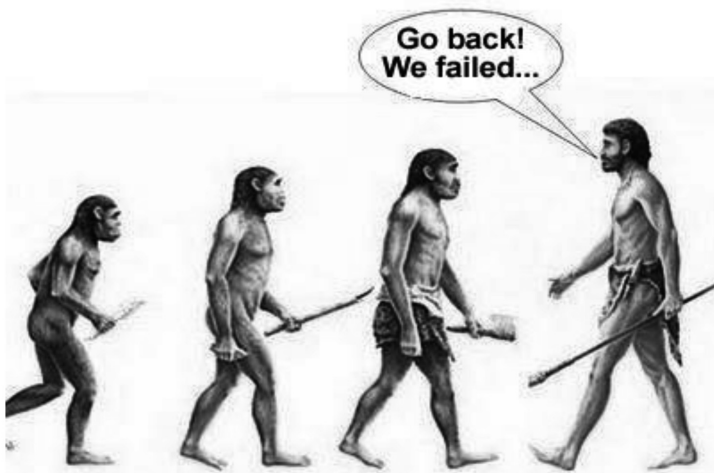
- 인종의 분류와 서열화 -경쟁력 중심 인종차별 정당화
- 다윈 '흑인을 백인과 고릴라의 중간자, 약자들에 대한 반대'.

두개골 용적률

- 18~19세기 인종차별을 과학적 증명 움직임.
- 몽골리언 황인종의 두개골 용적률이 코카시안 백인보다 더 크게 나와 사라짐.
- 인종주의?



기호의 해석



상징과 의미: 독일과 아리안



독일의 '하켄크로이츠(Hakenkreuz)



인도의 스와스티카(swastika)

독수리의 제국적 상징



13세기 신성로마,
비잔틴제국(동/서)

러시아 국장

나치의 상징



한국의 삼족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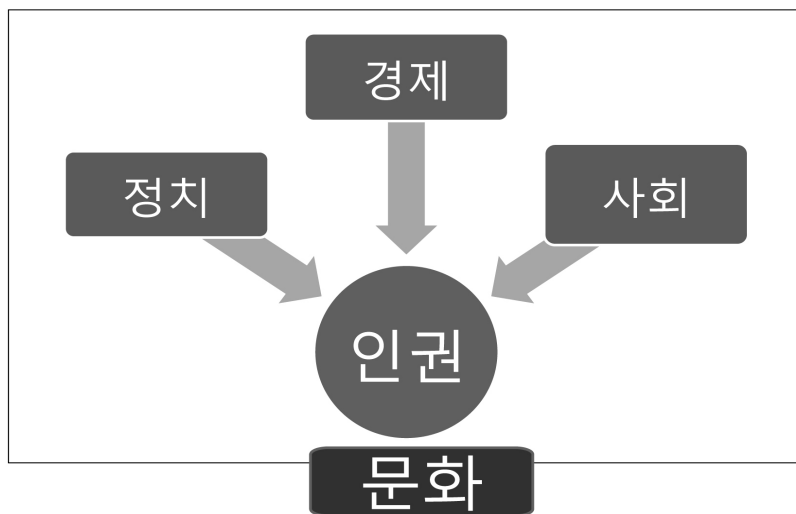
미국의 국장



다문화 연구에서 문화의 위치



인권의 문화적 접근



다문화 사회와 언어, 텍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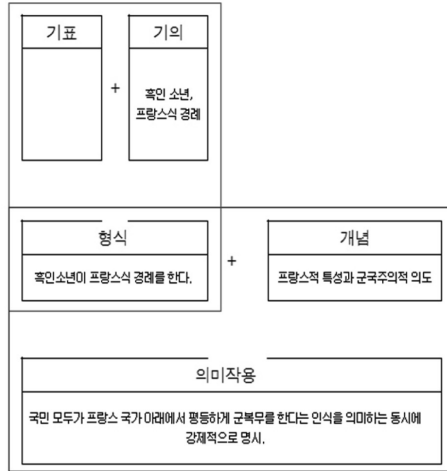


기호학적 다문화 리터러시와 다문화 비평



- 표현과 의미의 소통
- 소통과정에서의 문제
- 해석으로서의 주체 문제
- 의미의 강제화 및 보편화 문제
- 의미 형성의 권력과 헤게모니
- 의미화 정체성, 상대성 문제
- 의미의 고정화와 해체 문제
- 의미화에 나타난 의도 및 욕망의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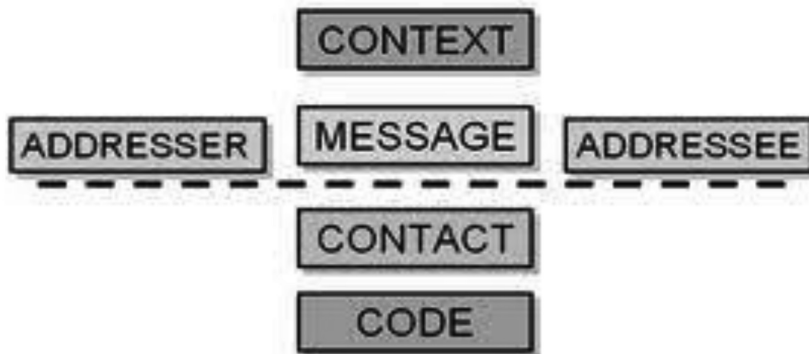
Barth의 신화와 이미지 형성



기호와 인권의 의미작용

일차적 의미작용(Primary Signification) - 외연적 의미(Denotation)	1. 기표 signifier	2. 기의 signified
	3. 기호 sign	
이차적 의미작용(Secondary Signification) - 내포 의미(Connotation)	I. 기표 signifier	II. 기의 signified
	III. 기호 sig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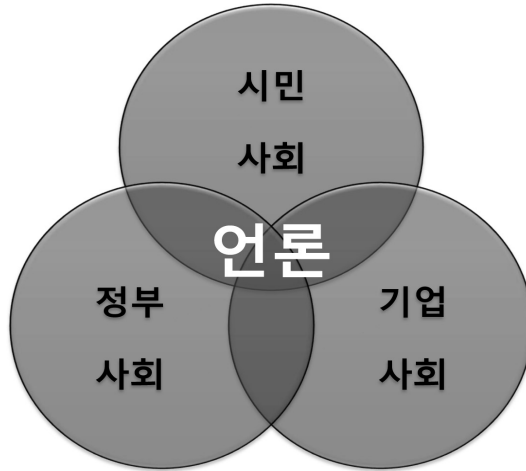
다문화 사회의 인권 담론 형성



다문화사회 인권과 문화 지배

- 인권의 영역
 - 1) 가시적, 비가시적 영역
 - 2) 물리적, 비물리적 영역
- 기호학적 인권 분석
 - 이미지 분석
 - 텍스트의 서사적 분석
 - 텍스트의 가치분석(의미분석)
 - 담론 분석(의미, 가치, 이미지의 사회화)
- 이미지분석 사례(구굴)
- 다문화 vs 이주 노동자

인권 담론 경쟁의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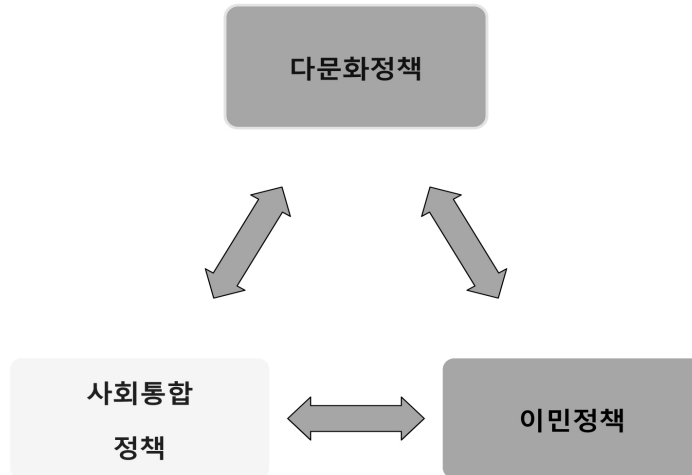


이론에 따른 시민사회의 시각

이론적 시각	행동의 초점	행동의 양식	행동의 단위	행동의 유형
마르크시스트	계급	연대, 투쟁	조직화된 노동	충성, 발언
자유주의자	시장	경쟁	개인	퇴장
공화주의자	대중	참여	유권자, 정당	발언, 충성
보수주의자	국가	복종	신민(subjects)	충성
공동체주의	공동체	시민권리, 의무	이웃	충성 퇴장

출처: N. Deakin.(2001). *In Search of Civil Society*. London: Palgrav, p.8. 주성수. (2006, 3판), 『NGO와 시민사회』. 서울: 한양대출판부. p. 42에서 재구성.

정부가 생각하는 다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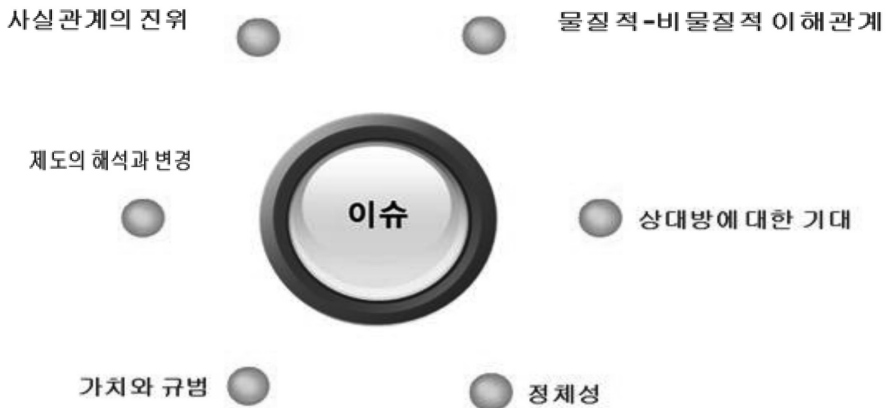
한국의 다문화 담론의 형성

- '국가의 국제화', '기업의 세계화', '국민의 지구시민화'를 통하여 무한 경쟁 시대의 '경쟁력 확보'를 추구하는 주춧돌의 역할을 한다
- 첫째는 '국가의 국제화'이다. 한국정부는 88올림픽을 거치면서 올림픽 참가자들을 위해 사회주의 국가에도 국경을 개방한 경험을 토대로 1991년 UN에 가입하면서 국제사회에 본격적으로 등장한다.
- 둘째는 '기업의 세계화'이다. 한국 기업들은 87년 노동자 대 투쟁을 거치면서 임금인상 조치 등을 통하여 내수시장을 활성화 하였으나 일본의 거품 경제가 붕괴 되면서 기업들의 수출을 늘리고 산업구조조정 차원에서 기업의 해외 진출을 서두르게 되었다.
- 셋째는 '국민의 지구시민화'이다. 1991년 현지법인 연수생의 도입 결정 이후, 1994년 산업기술연수생이 들어오면서 이주노동자의 인권문제가 사회화되기 시작하였다. 국제화에 걸 맞는 국민 역량강화로 나타났다.

의미의 비판적 읽기

- 1) 의미: 차이와 이항 대립
 - 다문화 가족 VS 국제결혼 가족
 - 다문화 가정 자녀 VS 코시안
- 2) 해석: 표층과 심층
 - 다문화, 이주노동자, 이주노동자 범죄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력상담소, 외국인 주민센터
- 3) 담론: 신화, 이데올로기
 - 다문화 정책, 다문화 가족, 이주노동자

인권의 출현과 갈등의 계기



인권 갈등의 계기 별 사례

- (1) 사실관계: 약속, 협약, 법적인 기준, 역사적 사실, 과학적-기술적 사실 등 사실적 자료나 정보의 불일치 (은폐, 축소, 과장 등)
 - - 외국인 범죄의 사실 관계
- (2) 이해관계: 의식주, 권력, 사회적 지위, 자아실현 등 생존과 번영에 필요한 물질적 심리적 필요
 - - 프랑스 폭동사건
- (3) 제도의 해석과 변경: 법, 제도, 관습 등의 사회적 규범의 변경이나 해석
 - - 고용허가제와 사업장 이동
- (4) 관계에 대한 기대: 타인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상대방에 대한 기대감 (부부, 부모와 자녀, 조직에서의 상하관계, 국가 간의 관계 등)
 - - 결혼 이민자와 폭력
- (5) 가치관: 사상, 신념, 종교 등 오래 동안 형성된 생각체계
 - - 러시아인의 집단 폭행
- (6) 정체성: 개인이나 집단의 본질적 특성 (피부색, 언어, 종교, 생활양식 등)
 - - 다문화 가정 자녀 방화 사건

사례1) 미디어와 인권: 스웨덴 사건



https://www.youtube.com/watch?v=QRoQdYh8YmE&feature=youtube_gdata_player

사례2) 결혼이민자와 인권



국제결혼과 다문화



한국 원주민들, 우리를 데리러 주소' 베트남 여성과 한국 남성들의 결혼이 희망적으로 볼 수 있다. 베트남 에이전트들은 '오래된 도량'을 꿈꾸고 한국의 남성들은 집단 유교문화권에 고취되어 있는 베트남 여성들을 찾고 있다. 베트남이 낯선 한국 문화에 대한 적응을 돕고 있다.

베트남 처녀들 “희망의 땅, 코리아로”

베트남 여성 황후선(29세, 그는 1990년 10월 10일 태생)은 2006년 12월 15일에 한국으로 건너왔다. 그녀는 '희망의 땅'을 꿈꾸고 있다. '희망의 땅'의 새로운 길, 한국, 국제 결혼을 꿈꾸는 그녀는 10명의 여인 중에서 그녀는 "좋은 남자를 만나고 싶어요"라고 말하며 말했다. 김지영(28세)은 2006년 12월 15일에 한국으로 건너왔다. 그녀는 "베트남 에이전트들은 모두 30살이 넘는 사람들이지만, 한국 에이전트 소파가 좋은 일입니다. 한국



반을 회복 내린 뒤 연내에 인연은 호프였다. 현재 그녀는 '희망의 땅'에 왔지만 그 당시 남자와 재회를 전 해왔다는 말 수 있었다. 호박떡사육사 당대 4시간 10분에 2006년 12월 15일 그녀는 3년 전부터 국제 결혼을 전 해왔다. 김지영(28세)이 황후선과 인연이다. 그녀는 "좋은 남자를 만나고 싶어요"라고 말했다. 그녀는 "좋은 남자를 만나고 싶어요"라고 말했다. 그녀는 "좋은 남자를 만나고 싶어요"라고 말했다.

많은 것은 한국으로 2006년에 왔었다. "이전, 2006년 12월 15일 황후선을 데리러 오고, 자수 일정에 따라 2006년 12월 15일 한국으로 왔었다. 그녀는 2006년 12월 15일 한국으로 왔었다. 그녀는 2006년 12월 15일 한국으로 왔었다. 그녀는 2006년 12월 15일 한국으로 왔었다.

그녀는 2006년 12월 15일 한국에서 왔었다. "이전, 2006년 12월 15일 황후선을 데리러 오고, 자수 일정에 따라 2006년 12월 15일 한국으로 왔었다. 그녀는 2006년 12월 15일 한국으로 왔었다. 그녀는 2006년 12월 15일 한국으로 왔었다. 그녀는 2006년 12월 15일 한국으로 왔었다.

사례3) 다문화가정과 이주여성



통계로 보는 국제결혼 문제

	총계	중국	베트남	몽골	필리핀	기타
2006~2011.	83,139	64,340	11,222	732	2,888	10,295
11	100%	77.3%	13.4%	0.8%	3.5%	5%
2006이후 유교 동북아 문화권		91.5%			기타	8.5%
2010	16,312	11,876	2,997	181	450	808
	100%	72.8%	18.3%	1%	2.7%	5.2
2010 유교, 동북아 문화권		92.1%			기타	7.9%

2006년 정부 외국인 다문화 정책 표방 이후 한국 국적 귀화자 통계
출처: 법무부 통계, (2011.12)를 재구성

사례4) 다문화 청소년의 이미지?



https://www.youtube.com/watch?v=tq4fdvNs_d78&feature=youtube_gdata_player

사례5) 이주노동자 이미지



내국인과 비교한 범죄율

내국인과 외국인간 5대 범죄 비교

	구분	합계	살인	강도	강간 및 성폭력	절도	폭력
내국인	안산단원	5,186	16	54	83	2,469	2,546
	2009	790	3	7	5	33	194
외국인	2010	669	3	9	13	29	303
	2011	863	3	1	11	36	352
내국인	안산상록	4,109	10	55	67	2,061	1,916
	2009	83	1	0	3	8	17
외국인	2010	85	1	1	3	7	22
	2011	128	1	1	3	12	16
내국인	시흥	6,217	15	84	105	3,218	2,795
	2009	349	3	10	3	59	63
외국인	2010	108	1	9	1	14	31
	2011	58	1	0	2	6	18

(단 내국인자료는 2009년 자료만 열람 가능해 2009년 기준임)

출처: 경기도 경찰청; 안산, 시흥 경찰서 2011.

사례6) 지역사회와 인권



민족감정에 의한 집단 패싸움? -경기도 국제범죄 수사대 설치



사례7) 유럽의 다문화주의 실패론?

- 복지 충당 위해 세금을 거두는 수단으로 전략한 이주민
- 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 英 노령인구 부양에 이민 노동자가 필요하다
- 영국이 노령인구를 부양하려면 앞으로 50년간 이민 노동자 700만명이 더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급속한 인구노령화로 영국의 노년층 부양비용은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14%에서 2062-2063 회계년도에는 20%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노년층을 위한 국민건강보험 부담은 GDP의 7%에서 8.8%로, 노인 간병비 부담도 GDP의 1.3%에서 2.4%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이를 감당하려면 190억 파운드(약 32조원) 규모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해 그만큼 정부 예산을 줄이거나 세금을 더 거둬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부가 국민연금 지급체계를 단일화하고 퇴직연령을 67세로 연장하는 대책을 마련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할 것으로 지적되었다. 따라서, 노령화 인구의 증가에 직면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 세수 확대에 기여할 이민자 확보가 절실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주를 글로벌의 수단으로 전략 시키는 경제정책

- - UN은 2006년 이주와 개발에 관한 고위급 회담
- 세계적으로 이주에 관해 논의하는 틀로서 정부끼리 참가하는 '이주와 개발에 관한 국제포럼(Global Forum on Migration and Development, GFMD)'이라는 것을 만들었음.
- - GFMD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개최되었고 2013-14년 행사는 2014년 5월에 스웨덴에서 열림.
- - UN에 따르면 이 회담의 목표는 '국제이주의 이익을 이주민과 국가들에 확대하기 위해 모든 수준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부정적인 측면을 감소시키며 개발과 연계'하는 것.
- - 이주를 개발과 연계시켜, 경제적 이익만 극대화하려는 혐의가 짙었음. 그래서 처음부터 이주민 운동 단체들의 비판과 저항이 끊이지 않았음.
- - 민간단체들의 압력 행사를 위해 MRI(Migrants Rights International) 쪽에서는 '민중, 힘, 공동체: 이주, 노동, 인권을 위하여'라는 슬로건으로 '민중의 국제행동(PGA)' 행사를 열 계획이고, IMA(International Migrants Alliance) 쪽에서는 '4차 국제 이주민&난민 총회'를 개최함.)

인권접근의 다양화



기호로 인권문제의 도전



이주인권과 정부 정책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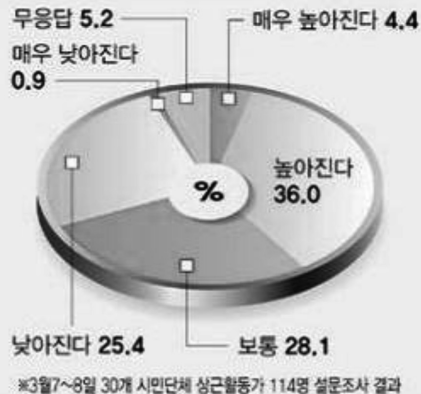
- 다 문화화 정책
- 문화(언어, 규범, 가치관, 종교, 이념, 생활양식, 법 등)에 대한 정책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언어교육정책과 다언어매체정책
- 다 제도화 정책
- 주류사회와 비주류사회 간에 공통적으로 혹은 개별적으로 적용 가능한 규범/제도/법 등을 만드는 정책
- 다 사회화 정책
- 기회평등과 결과평등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정책
- 다 평등화 정책
- 차별해소정책과 역차별 해소 정책을 모두 포함

이주인권과 민간단체의 역할

시민운동 위기의 실제·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앞으로 시민운동의 대중적 영향력은 높아질까?





경기도외국인정책 간담회 및
지원단체 활동가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정책 간담회 Ⅰ

재외 동포정책의 현황과 전망

(경기도를 중심으로)

- 1 국내체류 고려인동포에 대한 정책방향
- 2 중국동포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
- 3 패널 토론





국내체류 고려인동포에 대한 정책방향

이천영 (고려인마을 협동조합 이사장)

- (1) 고려인 H-2(무연고방문취업) 비자 발급후 국내입국한 고려인동포에 한해 (동일회사 2년근속이나 국가자격증 취득 후) F-4 비자 발급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

사례1)

김나탈리아(32세)씨는 한국어 구사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인력과견업체로부터 일자리를 소개받아 광주 광산구 월곡동 소재 대명산업에 취업 근무를 시작했다. 입사시 광주고용지원센터와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고용사실을 보고하여 정식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고용주의 말을 믿고 근무를 시작했다. 처음 근무 한달 부지런히 일한 결과 소정의 임금을 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고용허가 등록에 대한 의심은 추호도 하지 않았기에 고용센터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물론 한국어구사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확인자체가 불가능했다. 1년 6개월 후 광산구 고려인마을협동조합 신조야 센터장을 만나 F-4 비자 신청에 관해 상담하던 중 우연히 고용센터에 확인한 결과 김나탈리아씨는 문의당시까지 고용센터는 물론 출입국에 고용사실이 등록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주저앉고 말았다. 고용주에게 이유를 묻자 “회사의 여건상 외국인은 2명만을 고용하도록 되어있으나 한국인 없이 외국인고용을 늘렸기에 T,O가 없어 등록하지 못했다”며 “월급은 제대로 주었으니 자기의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냐?” 는 말에 약자인 외국인으로서 항의조차 못하고 속앓이를 해야 했다. 결국 고용주는 부담이 되었는지 김나탈리아씨를 해고하고 말았으며 김나탈리아씨는 F-4를 받아 가족을 초청 조상의 땅에서 살아가겠다는 꿈을 눈물을 머금고 접어야만 했다.



사례2)

이 그레고리(42세)씨는 우즈베크출신 고려인 3세이다. 우즈베크의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해 가족을 부양할 방법을 찾던 중 근로자로 일하며 돈을 벌며 무너져가는 가정을 일으켜 세울 목적으로 조상의 땅 한국에 입국 일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처음 입사한 회사가 일한지 3개월만에 부도가 나 한편의 월급도 받지 못하고 퇴사하고 말았다. 그후 친구소개로 취업한 회사마저 일한지 11개월만에 경기불황을 이유로 해고되자 또 다시 일할 곳을 찾아 전국을 떠돌았다. 그후 F-4 비자 갱신 기간이 가까워오자 하던일을 멈추고 비자발급조건을 맞추기 위한 국가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직업학원에 세탁기능공과정을 등록 공부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한국어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필기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F-4 자격기준을 맞추지 못하고 F-4 비자발급을 포기하고 말았다. 또 다시 우즈베크에 들어가 H-2(무연고방문취업) 비자를 발급 후 한국에 입국 일하고 있으나 현재 근무하는 회사가 부도가 나 쫓겨날 경우 또다시 비자발급을 포기해야하는 상황이 발생 가족을 초청 조상의 땅 한국에서 행복한 삶을 꾸려가겠다는 꿈이 사라질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2) F-4(재외동포비자) 소지자의 단순노무행위 대한 취업제한을 풀고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제외한 직종은 관계없이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F-4(재외동포비자) 소지자의 단순노무가 아닌 전문 직종에서만 취업할수 있다는 규정으로 인해 고려인들은 종사업종 제한이 커진 것은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는 제조업은 물론 식당, 건설현장 등 58개 직종의 단순노무에 종사할 경우 불법취업으로 인식되어 벌금과 함께 강제출국 당할 수도 있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할까 두려워 불안에 떨며 일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례1)

최 아날토리아(36세)씨는 우즈베크고려인 3세이다. 그는 대학을 졸업했기에 대학졸업자에게 주어지는 F-4 비자를 받아 한국에 입국 돈을 벌 방안을 찾았다. 그는 비자 조건이 요구하는 전문직종에 취업해야 하나 한국어구사능력이 전무하고 단지 러시아어만 구사할 수 있기에 한국의 어디에서도 자신을 받아 줄 회사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결국 제조업에 들어가 일하고 있다. 하지만 출입국사무소를 방문 외국인등록을 할 당시 취업제한에 대해 고지사항을 들었기에 불안에 떨며 일하고 있다. 출입국직원에게 적발될 경우 1차에 한해 경고하고 2차 적발될 경우 강제 출국시킬 수 있다는 규정을 강조하고 있기에 늘 마음에 부담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전문직종은 한국인도 구하기 어려운 직종으로 고려인이 차지한다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렵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현재 노부모와 자녀 둘을 부양하며 살아가는 최아날톨리아씨는 한국정부가 고려인 가족들이 조상의 땅 한국에 들어와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취업제한을 풀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3) F-4(재외동포비자) 소지자가 동반한 자녀가 만 19세가 될 경우 등록국가로 귀환해야 한다는 규정을 개정하여 부모와 생이별을 막아야 한다.

(규정 : 만 19세 자녀의 귀국시 만 25세가 될 때까지 머물다 H-2 비자를 받아 들어오거나 만25세 이전 C-3(단기일반방문비자)로 입국 국가자격을 받을 경우 F-4, 비자갱신할 수 있음)
이 규정중 C-3(단기일반방문비자)로 재입국한 경우 한국어가 능통한 조선족과 달리 고려인 자녀의 경우 한국어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국가자격증 취득이 불가능해 F-4, 비자 갱신이 어려운 상황임

사례1)

김블라직(22세)은 한국에 입국한 부모 김발레르(52세)씨가 H-2 비자를 F-4로 갱신한 후 19세 이하의 자녀 넷을 동반(F-1)비자로 초청한 경우이다. 그 중 장자인 블라직이 한국에 입국 1년만에 만19세가 되자 현행법으로 비자연장이 불가능해 원적이 있는 우즈벡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아버지 김발레르씨가 자녀 4명을 데려오면서 우즈벡에 있는 가산을 정리하고 왔기에 돌아갈 처지가 없어지고 말았다. 결국 친척집에 3개월 머물다 C-3(단기일반방문비자)로 초청 비자연장을 위해 동시대 한국어과정에 등록 공부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막노동을 하는 김발레르씨는 가족의 생계를 담당하며 6개월에 300여만원에 달하는 학비를 조달하지 못해 비자를 연장받지 못했다. 결국 아들 블라직은 또다시 우즈벡에 돌아가고 말았다. 생이별의 아픔으로 인해 고민하던 김발레르씨는 또다시 자녀를 C-3(단기일반방문비자)로 초청 국가자격증을 취득시키려고 학원에 등록, 지원했지만 한국어구사능력 미달로 필기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귀국해야하는 아픔을 반복하고 있다.

(4) 제10306호로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시행 2010, 11. 21)’ 은 국내 체류고려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내에 체류하는 고려인의 취학 전 자녀들에게는 보육비를 지원하고 성인이 된 자녀들에게는 국비로 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며, 영주권이나 국적 취득 시에 특혜를 주도록 해야 한다.



첫째, 고려인을 포함한 동포 자녀의 취학 전 자녀에 대한 보육비 지원

정부는 2010년 5월 20일 법률 제10306호로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시행 2010, 11, 21)’ 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외국에 거주하는 고려인에 대한 지원 사업은 있으나 국내에 입국하여 정착하는 고려인에게는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한국 거주 고려인의 수가 4만여명에 달하나 가족단위로 입국하고 있어 국내체류 고려인을 위한 보육 지원, 교육비 등 정착을 위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사례1)

우즈벡 고려인자녀 김알랴나(5세)는 김빅토리아(37세)씨의 자녀이다. 김빅토리아씨는 H-2 비자로 일하다가 F-4 로 비자를 얻게 되자 곧 바로 본국에 돌아가 친지에게 부양을 의뢰했던 어린 자녀 김알랴나를 데려왔다. 아이를 두고 온 죄책감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살았던 과거의 아픔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각오를 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이를 두고 일터에 나갈 수 없어 어린이집 종일반에 위탁하자 비용문제로 심각한 위기에 처하고 말았다. 다문화가정 자녀와 달리 고려인 자녀는 한국국적이 없다는 이유로 정부 보육지원이 없어 일 8시간 기본보육비 30여만원과 함께 8시간 초과보육비를 더해 월 50여만원의 어린이집 위탁료를 감당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게다가 주야 맞교대로 일하기에 종일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없어 아이를 데려온 것을 후회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결국 고려인마을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24시간 종일운영 어린이집에 위탁 월 20여만원에 아이를 보육하고 있지만 자체 운영하는 고려인마을 협동조합어린이집도 심각한 운영난에 직면해 있다. 이유는 위탁어린이 대부분이 한국국적이 없다는 이유로 정부지원이 한 푼도 지원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다문화가정 어린이는 한국인과 차별없이 보육비를 지원하고 있어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던 고려인 후손에 대해 심각한 차별로 애국심이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고려인들은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이 국내체류 고려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반드시 개정됨으로 보육비와 교육비를 지원해야한다.

비교표

구분	국가지원 종류
한국인과 결혼한 다문화가정출생 자녀	보육비지원, 교육비지원
한국인과 재혼을 통한 중도입국 다문화청소년	보육비 지원, 교육비지원
북한이탈주민 가정	정착금지급, 보육비, 의료보호, 취업지원, 교육비 지급
고려인동포 및 조선족동포 가정	정착금, 보육비, 교육비 지원전무, 중복제천 폴리텍대수학교 입학거부

둘째, 영주권이나 국적 취득 시 고려인과 동포에 대한 특혜 부여

1937년 스탈린 강제이주 정책에 의해 1938년 10월 어느 날 갑자기 소련 정부는 고려인 지도자 3천명을 새벽에 불러내어 전원 총살시켰다. 유감스럽게도 중국조선족과 다르게 고려인은 우리말과 문화를 잃어버렸다. 이유는 단 하나, 민족 지도자들이 전부 총살당하면서 지도자 없이 부평초처럼 살다 보니 민족의 문화와 언어를 유지하지 못한 것이다. 게다가 러시아의 민족교육 탄압으로 자국 언어와 문화를 계승할 기회마저 상실하고 말았다.

고려인들은 연해주에서 강제 이주를 당해 중앙아시아에 흩어져 살고 있는 그들이 이제나마 조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이 그들로서는 다행이긴 하다. 그렇다 해도 한국어를 잊어버리고 한국 문화를 잃어버린 그들이 한국에 정착하기에는 극복하기 어려운 제약이 너무 많다. 이런 그들의 처지를 감안해서 그들이 영주권이나 국적을 취득할 때 특혜를 줄 필요가 있다.

첫 번째, 그들이 한국에서 연속적으로 5년의 체류기간을 채울 수 있도록 H-2 체류자격이 만료되는 대로 다른 조건 없이 F-4로 자격변경을 해 주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영주권이나 국적 취득의 요구 기간을 채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 영주권이나 국적을 신청할 때 요구하는 3천만원의 재산증명을 그들의 현실에 맞게 하향 조정해야 한다. 중국동포와 달리 고려인의 경우 5년을 일해서 3천만원의 돈을 모은다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일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재산증명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고려인들이 영주권이나 국적 취득을 하려고 할 때 그들에 대해서는 한국어 능력 평가 수준을 그들의 현실에 맞게 하향 조정해야 한다. 고려인들의 경우 한국말을 전혀 할 줄 모르고 한국 문화를 알지 못하는데 그들이 한국에서 일을 하면서 한국말을 익히고 한국 문화를 배워 현재 요구하는 영주권이나 국적취득을 위한 자격시험을 통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물론 정부에서는 이를 대체하기 위해 사회통합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나 이들이 매일 일을 하면서 총 500시간(초보인 경우)에 이르는 전 과정을 수료하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하다. 이를 위해서 이들이 쉽게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등록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을 늘릴 것과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초보과정(150시간에서 200시간 정도)만 이수하도록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

결어)

국가와 민족이 어려울 때 독립운동을 통해 몸 바쳤던 이들과 후손들을 우리가 소홀히 한다면 훗날 역사는 현재의 우리 자신을 소홀히 할 것이며, 또다시 국가와 민족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될 때 누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겠는가?



귀환동포 지원법 반드시 제정돼야

이천영 (고려인마을 협동조합 이사장)

‘귀환’이란 말은 국권이 유린당해 포로로 끌려갔다 탈출하거나 자연스런 환경변화로 원래의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고대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 노예 생활을 해야 했다. 그후 타민족을 포용하는 황제가 등장하자 이스라엘 민족의 귀향을 허용했다. 우리 민족의 역사에도 어쩔 수 없이 끌려간 눈물어린 사례들이 많다. 고구려가 당나라와의 전쟁에서 패하자 당나라는 약 20만명의 고구려인을 포로로 잡아 중국대륙으로 끌고 갔다. 그리고 반란을 일으킬까 두려워 중국 전역에 흩어져 살게 했다.

또 원나라가 들어서고 한반도가 몽골군에 의해 점령되자 많은 고려인들이 포로가 되어 중국대륙으로 끌려가야 했다. 임진왜란 당시도 마찬가지였다. 일본군이 신식 조총을 앞세워 한반도를 파죽지세로 유린했고 전쟁이 끝날 무렵 많은 조선인들의 두 손을 묶어 일본으로 끌고 갔다. 그후 구한말 일본에 의해 한반도가 또다시 침탈되자 많은 조선인들이 개척 식민단이라는 이름으로 끌려가거나, 또 항일운동을 위해 연해주와 만주로 망명을 가야했다. 200만 조선족과 50만 고려인들이 바로 그들이다.

5000년 한민족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민족은 포승줄에 묶여 피눈물을 흘리며 정든 고국을 떠나야 했던 약소민족의 서러움과 한(恨)이 내재되어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분명하고 명백한 역사의식과 민족애를 가지고 고려인 동포를 바라봐야 한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정부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보니 안타깝기만 하다.

우리는 일제강점기 독립을 위해 연해주로 갔다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당한 고려인 동포를 재외

동포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지난 1948년 입법의회가 통과시킨 ‘국적에 관한 조례’를 통해 우리 국민이 된 사람들이어서 고향에 돌아와 살 천부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부는 안보상의 이유와 국내 노동시장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들의 귀환을 제약하고 불법체류자라는 멍에를 지워 강제추방을 일삼아 왔다. 또 재외동포법상의 권리를 재외 동포에게 부여할 때에도 이들을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그러나 이 법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렸으며, 이에 국회는 재외동포법을 만장일치로 개정하여 이들을 재외동포로 포함시켰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공포한 바 있다. 하지만 지금도 법무부는 고려인 동포에 대해서는 재외동포법을 전면 시행하지 않고 있어 광주 광산구 고려인마을 주민 중 일부는 비자문제로 가족이 생이별해야 하는 위기에 처해 있다.

현지 고려인 동포의 삶은 더욱 고통스러워지고 있다.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당한 동포들은 구 소련연방 붕괴 후 살던 곳에서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쫓겨나 유랑민족으로 전락했다. 이들 가운데는 무국적자가 된 동포들이 2000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들은 고국으로의 귀환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으며, 이들은 우리말도 잘 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너무도 절실한 때가 온 것이다.

따라서 재외동포법 적용은 물론 이스라엘이 실시하는 귀환동포법을 제정 동포들이 조국으로 귀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 이법을 통해 고려인동포들이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아니라 조국이 품어준다는 포근함을 가슴에 담을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그래서 그동안의 서러움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덜어줘야 한다. 같은 피를 나눈 내 민족이니까.

과거 인구가 폭발할 때 외국 이민을 적극 권장했지만 지금은 가임여성의 출산율이 1.2명으로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가 감소하는 나라가 됐다. 그렇다면 이제는 유랑민으로 전락한 고려인동포의 국내 귀환을 적극 권장, 환영해야 한다. 이 뿐만 아니라 국내 시장에서는 여전히 외국인 노동력이 필요한데, 외국인노동자보다 고려인 동포들을 우선 활용하는 것이 경제발전과 사회통합이라는 국익 차원에서 훨씬 바람직할 것이다.



중국동포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이정혁 (안산외국인노동자의집 · 중국동포의집 소장)

1. 조선족이 아니라 중국동포입니다.

똑같은 산을 일컬어 우리나라에서는 백두산 이라하고, 중국에서는 장백산이라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민족을 부르는 이름도 다릅니다. 중국의 동북3성 - 흑룡강성, 길림성, 요녕성 지역을 중심으로 200만 명 이상 거주하는 중국동포들을 일컬어 중국 측에서 부르는 명칭이 조선족입니다. 어찌 보면 다민족국가인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이 일면 성공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한족과 다른 조선족입니다, 그렇지만 중국의 일원입니다. 하는 뜻이지요, 해서 자연스럽게 중국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은 중국의 한 소수민족의 일원으로, 조선족으로 불리워지며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 그곳, 중국에 가게 되었고, 이들의 현재의 모습을 본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들은 조선족이 아니고 중국동포입니다 라고 불러야 할 것입니다.

대략 지금의 중국동포들이 중국으로 이주를 시작 한 시점은, 1870년 전후라고들 봅니다, 지금의 연변, 간도를 중심으로 버려지다시피 한 광활한 이 지역을 개척하기 시작 한 것입니다. 더구나 20세기 초엽 일제의 탄압이 노골화 되면서 집단적으로 일제의 탄압을 피해 만주로, 중국으로 이주를 시작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집단적으로 이주를 시작하고, 마을을 이루고, 땅을 경작해서 지금의 동포사회를 이루기 시작 한 것입니다. 이들 가운데는 우리의 민족시인인, 운동주시인도 있고, 안중근의사도 있고, 그 외에 이름 모를 독립운동가 들이 다 이때 만주로, 간도로, 중국전역으로 이주한 것입니다. 물론 상해 임시정부요원들 모두 포함되겠지요,

이분들은 130년이 지난지금까지도 우리의 말, 우리의 문화를 깨끗하게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이들의 공민증에는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이라 찍혀있지만, 100년이 지나 지금까지 2세, 3세의 우리 동포의 후손들은 여전히 우리의 말과 우리의 문화를 지켜 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만났어도 여전히 경상도사투리, 전라도 사투리를 하는 이분들을 보면 신기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우리사회에서는 아직도 이들을 우리의 동포가 아닌, 조선족으로 대합니다. 이 어찌 통탄 할일이 아니겠습니까? 김대중 정부시절 만든 정말 민족이 어려울 때 일제에 무릎 꿇기 싫어서 이 땅을 떠났던 우리의 중국동포들은 지금, 재외동포가 아닌 중국의 한 소수민족의 자격으로 이 땅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헌법에서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는다고 규정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스스로 48년 이전 이 땅을 떠난 우리의 중국동포들은 우리의 재외동포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모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고구려 역사를 놓고 한·중간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스스로 48년 이전의 우리 역사를 부인하고 있는 한 제대로 된 우리의 역사, 우리의 민족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 전 중국정부의 한국관련 한 사이트에서 48년 이전의 한국 역사를 모두 삭제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 민족을 부인하고, 자기 역사를 부인 하는 한 제대로 된 미래를 장담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분명 200만 중국동포들은 중국의 한 소수민족으로서의 조선족이 아닌, 우리의 혈육인 중국동포로서 인정받아야 할 것입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재외동포는 한국국적을 보유한 재외국민과 외국국적을 가진 거주국의 시민권인 동포를 뜻하는 외국국적동포로 구분된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재외국민”이라고 하고,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를 원칙적으로 “외국국적동포”라고 한다.



2010년 현재, 우리 한민족은 전 세계 176여 개 국가에 약 700만 여명의 재외동포들이 한민족 디아스포라를 형성하고 있다. 재외동포 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중국, 미국, 일본, CIS 순이며 이들 4개 지역이 전체 재외동포 수의 90% 정도를 차지한다. 이러한 재외동포 규모는 우리나라의 인구수에 비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며 그 수에 있어서도 전 세계 국가 중 최상위에 속한다. 재외동포는 국가발전에 매우 중요한 자원이다. 이러한 까닭에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재외동포 사회의 발전과 역량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한다. 해외동포의 역할과 자산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재외동포정책은 국가발전의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된다.

그 가운데 오늘은 특별히 중국동포의 이주 역사와 현황 그리고 앞으로 전망에 대하여 발제를 하려고 한다.

2. 중국으로의 이주

중국은 13억 인구를 갖고 있고 한족과 56개 소수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약 200만 명 가까운 우리 동포들은 압록강 위쪽인 요녕성, 두만강 위쪽인 길림성, 북만주 하얼빈이 속한 흑룡강성에 주로 살고 있으며 근래에는 인구가 많이 줄고 있다고 합니다.

두만강 위쪽에 있는 연길, 용정, 화룡 등을 묶어서 연변이라고 부르는데 그곳 인구의 60%가 우리 동포이기에 여행할 때 큰 불편이 없다고 합니다. 예로부터 이 지역을 간도지방이라 하였고, 두만강 북쪽지역 길림성과, 이등박문을 싸 죽인 하얼빈이 있는 흑룡강성 등을 만주라 불렀는데, 이곳은 고구려와 발해의 조상들이 나라를 다스렸던 곳입니다.

1 간도라는 명칭의 유래

백두산에서 발원하는 두만강을 동북쪽으로 완만하게 흐르다가 함경북도 끝자락에서 동해로 흘러 갑니다. 또 하나가 백두산에서 발원하여 북쪽으로 흘러가는데, 이 강이 송화강입니다.

이 두 강 사이 넓고 기름진 땅을 가운데 놓고 만주족과 우리 한민족이 오래 동안 시비를 벌여왔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큰 섬과 같다 해서 간도라 했지요.

또 어떤 주장에 의하면, 우리민족이 오랫동안 주인 없이 살던 땅을 두만강 건너가서 개간하고 개척하여 정착하고 살았다하여 간토의 사투리로 간도라 했지요(현규환 박사) 간도의 면적은 남북 평균거리 160km, 동서 100km 정도고, 70%가 산악지대이며 구릉지대15%, 평지6%정도입니다. 간도는 연길현, 화룡현, 훈춘현, 왕청현 4개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땅을 한동안 아무도 들어 갈 수 없었던 것은 만주족 누르하치, 즉 청나라 태조의 탄생지라 하여 그 땅을 신성하게 여겨 성역화 시키고 중국인들에게도 1860년 엄한 금족령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강을 건너 북간도에 닿는 자는 사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초기 이민자들은 몰래몰래 강을 건너가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는 추수하여 돌아오곤 하다가, 1845년부터는 함경도 두만강 인접 거주민들이 재해나 극심한 가뭄으로, 특히 1869년 함북, 평북 등 서북지역을 휩쓴 이른바 기사년 흉년으로 생계가 어려워지자 이래죽으나 저래죽으나 같다며 목숨 걸고 소작농 등일 건너가 벼농사를 짓고 뿌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청나라는 국내의 문제로 지방 통치력이 이완되자(1895년 청일전쟁 패전, 1900년 의화단사건으로 러시아가 만주 진출)월강금지령을 통제 할 수 없어졌습니다.

이때 한인들의 집단적인 이주가 주로 평북과 함경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1905년 을사늑약 이후 1910년 한일 합방 전후 국가 패망기에는 전국 각지에서 이주해 왔습니다. 1900년대 한국인 이주자는 그 지구 인구 총13만 중에 10만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인들이 북간도 이주를 하게 된 중요한 동기는 1)경제적 어려움에 있었으며, 농업이민이 대종을 이루었지요. 2)그러나 1910년 한일합방 전후기에 이르면 이주의 양상이 달라지지요. 일제 통치로부터 탈출하고자 하는 정치 사회적 성격의 이도 행하여졌으며, 의병전쟁이 독립전쟁으로 전환되고 신민회의 같은 비밀정사의 애국계몽운동단체가 국외에 망명하여 독립운동기지를 건설하고자 하는 계획을 실천함으로써 이주가 행해지기도 했습니다. 3)또한 전혀 다른 차원으로, 종교적 신앙의 자유를 얻고자 하는, 즉 이상촌 설립을 위한 이주가 행해지기도 했습니다. 이상과 같은 여러 복합적인 동기가 발견되며 이주자의 출신지역도 함경도 지역분만 아니라 경상도, 전라도 등 전국적으로 확대 되는 것입니다.

2 1918년 무오독립선언서

1909년 간도협약이 조인되고, 다음 해에 합방의 비운까지 당하자 북간도 한인들의 민심은 실로 불안했습니다. 북간도 항일 운동은 1915년부터 1918년 사이에 가장 고조되었습니다. 일제의 무단정치 탄압이 북간도에까지 미쳤고, 국민회의 (회장 김약연기존의 연변교민회의, 간민회 조직을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이동휘망명과 함께 확대 조직함) 지도자들은 항일교육을 더욱 맹렬히 했습니다. 당시 북간도에는 국내에서 쫓긴 애국지사들이 많았고, 제1차 세계대전 관계로 무기를 마음대로 구할 수 있었습니다. 명동학교 학생 또는 졸업생들이 결사대, 충렬대, 단지동맹을 조직한 것도 이 무렵이지요.

북간도 동포들이 가장 격분한 것은 1917년의 일이었습니다. 즉 러시아에 레닌의 혁명으로 시베리



아에 출병했던 일본은 바뀐 정원의 나라에 함부로 간섭할 수 없으니까 결국 철군하면서 죄 없는 북간도 교민들에게 화풀이를 했습니다. 이에 참다못하여 일어난 것이 이른바 무오독립 선언입니다. 1918년 북간도 국민회의 지도자들이 발의하여 미국, 러시아 만주, 등에 있는 모든 독립투사들을 망라하여 대한독립의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서명한 지도자들이 39명이며, 김약연, 정재면, 박용만, 김규식, 박은식, 이시영, 이승만, 최병학 이시영, 김좌진, 신채호, 이범윤, 안창호등입니다. 33인 민족 대표보다 6명이 더 많았고, 1년이나 앞 선, 이 선언선은 1919년 2월 8일 동경한인 독립선언과 1919년 3월 1일 기미년 독립선언들의 기초가 되었다.

3 북간도 이주민 상황

초기의 이주 한인들은 청국 당국의 묵인으로 중국인 지주와 이주 한인 농민들 간에 우호관계를 긴밀히 이루었지요. 그러나 1907년 이후에 가서는 일제가 미해결 상태였던 한국과 청국 간의 간도 귀속 문제에 끼어들어 간도를 조선 영토로 간주 한다고 주장하며, 통감부 임시 파출소를 간도에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간도에 거주하는 한인들을 청의 관현으로부터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간도 침략을 획책하였지요. 이에 중국인 지주와 중국관현들은 이주 한인들을 압박하기 시작했고, 한인들은 곤란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지요. 어려운 상황들을 열거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생계의 곤란, 2. 중국관현, 일본 영사관 경찰의 감시 감독, 3. 정치적 불안과 마적의 습격에서 오는 생명의 위협, 4. 불법과세, 중국관현의 불법 주구, 압박, 폭행, 강제귀환, 강제 탈거, 5. 동족 간의 불화, 6. 개척 변경지대에서의 생명의 위협, 중국인 지주와 한국인 소작인 간의 소작료의 비율에 대한 횡포 등.

3. 오늘의 현황

1 중국동포 체류의 현황

1992년8월 한중수교이후 꾸준히 증가하던 중국동포들의 귀환은 2000년에 들어와서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취업관리제 도입 등으로 2002년도에는 국내에 등록된 장기체류외국인이 252,457명으로 까지 증가하게 되었다. 여기에 2002년 7월 ‘외국인력 제도 개선방안’ 과 2003년 8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등 외국인력 제도에 대한 정부의 본격적인 법률 제도적 기반 마련을 전후하여 내려진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대규모 선별적 합법화조치 등으로 인해 장기체

류외국인규모는 더욱 늘어나서 2003년 말에는 437,954명이 된다. 2007년 3월 4일부터는 중국 및 CIS 지역에 거주하는 동포들에 대한 한민족 포용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법무부의 방문취업제의 시행으로 자연스럽게 국내에 체류하는 이들 이들 국가의 동포 인구도 급증하여 제도 시행 이전에 130,000 여명이었던 것이 불과 2년 만인 2009년 3월 31일에는 318,581명으로 급증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서 우리나라의 재외동포 정책에서 중국동포가 차지하는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게 되었다. 체류외국인 150만 명을 헤아리는 오늘날도 이들 외국인들을 체류 자격과 국적별로 분석해보면 조선족인 중국동포들이 각 체류 자격에서 중요한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연도별 추세

2013년 2월 현재, 재외동포는 544천명으로 2003년에 비해 약 4배가량 증가하였다. 이는 2002년 취업관리제, 2004년 고용허가제, 2007년 방문취업제 등으로 입국이 크게 증가한데서 기인한다.

● 체류자격에 따른 분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3년 2월 현재 한국에 체류하는 재외동포(외국 국적동포)의 총인원은 544,450명이다. 재외동포를 체류자격별로 보면 방문취업(H-2) 자격 체류자 수가 234,153명(중국동포 : 223,697명, CIS 지역 고려인동포 : 10,419명)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재외동포(F-4) 체류자 수(196,835명)가 많다. 재외동포 체류자격별 자세한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3〉 외국국적동포 체류자격별 현황

(2013.2.28. 현재, 단위 : 명)

자격 계	방문취업 (H-2)	재외동포 (F-4)	일반연수 (D-4)	영주 (F-5)	방문동거 (F-1)	기타
544,455	234,153	194,189	314	54,307	16,267	45,225

〈표4〉 방문취업(H-2)자격 소지자 국적별 체류현황

(2013.2.28. 현재, 단위 : 명)

국적 계	중국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기타
234,116	223,697	925	8,465	1,029

〈표5〉 재외동포(F-4)자격 소지자 국적별 체류현황

(2013.2.28. 현재, 단위 : 명)

계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중국	러시아	기타
196,835	44,633	13,116	3,766	1,790	123,208	2,933	7,389



여기서 중국동포의 대부분은 국내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 자격을 소지하고 있다. 정부는 중국동포에 의한 우리 국민의 일자리 잠식을 막기 위해 방문취업(H2) 동포의 체류규모를 30만 3천명으로 통제하고 있으나, 중국동포는 방문취업(H-2) 외에 재외동포(F-4), 영주(F-5) 등의 체류 자격을 얻어 취업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 중국동포 체류정책의 한계

방문취업제의 시행은 중국 동포사회의 민족 정체성 고양과 한국에 대한 이미지 제고 등에 큰 효과를 가져왔다. 그 동안 모국 입국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던 한국에 친척 등의 연고가 없는 동포들에게까지 한국 입국의 길이 열리게 됨에 따라 중국 동포사회에는 일대 한국 열풍이 불게 되었다. 2013년 2월 현재, 방문취업 체류자격의 중국동포는 총 234,153명으로 체류 외국인 중 가장 큰 규모의 집단을 형성하고 있다. 방문취업제는 중국동포의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한국 체류에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것은 결국 중국동포들에게 자유로운 한국 체류가 가능한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과감하게 부여할 때 오히려 동포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한국에 정착할 수 있을 것임을 알 수 있다(아래 <표6> 참조).

<표6> 불법체류자 현황

(단위 : 명, 2011년 5월 현재)

총 불법체류자(168,450)									
전문 인력 (E-1~ E-7)	단순기능인력			단기취업 등(6,250)				유학생 (D-2)	기타
	비전문취업(E-9)		방문 취업자 (H-2)	단기 취업 (C-4)	산업 연수 (D-3)	기업투자 연수 (D-8)	선업 취업 (E-10)		
	고용 허가제	기타							
2,751	15,936	26,486	3,943	231	3,041	695	2,283	4,557	108,527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최근에 내국인 고용보호를 위해 중국동포의 입국을 규제하기 시작했다. 2009년 이후부터 정부는 ‘국내 노동시장을 보완하면서 산업현장의 인력수요에 적합하게 외국 인력을 활용’ 한다는 방침에 따라 방문취업제 중국동포의 도입 규모를 급격히 제한하여 왔다. 방문취업제 중국동포도 “외국인력” 이며 따라서 서민들의 일자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면 연간 외국 인력도입 규모 내에서 제한을 받게 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 동포포용정책 차원에서 추진된 방문취업제는 그 근본 정책취지가 크게 탈색되고 외국인근로자 정책으로서의 성격이 더 강한 정책으로 변질되어 버렸다.

정부는 방문취업자격 만기가 되는 동포들은 저숙련 외국 인력의 단기순환원칙에 따라 반드시 출국해야 한다는 방침을 확고히 하고 있다. 다만 한국에서 계속 체류하는 길을 열어 주지 않으면

중국동포가 대규모 불법 체류할 것을 우려하여 정상적으로 출국하는 경우, 출국 이후 1년 또는 6개월(제조업 종사자) 및 3개월(1차 산업 종사자)이 경과한 후에 방문취업 체류 자격으로 한국 재입국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만기출국일 기준 만55세 이상인 자들에게는 재입국 시에 방문취업 체류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3년 유효한 단기종합사증(C-3)을 부여함으로써 국내에서의 취업을 근본적으로 봉쇄하여 버렸다. 이와 같은 정부의 조치는 5년 만기 이후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를 통하여 한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줄 것으로 기대하던 중국동포들에게는 매우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정부는 5년 기한의 방문취업 체류 자격을 통하여 중국동포를 외국 인력의 범주로서 관리하고 있다.

㉓ 중국동포 체류정책 전환 : 재외동포(F-4)자격 부여

2011년 3월말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자의 수는 96,775명이었고 그 중에서 중국동포가 44%(42,202)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후 약 2년이 경과한 2013년 2월말 현재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동포는 총196,835명이고 그 중에서 중국동포가 123,208명으로 국내체류 재외동포의 62.5%를 차지할 정도로 급변하였다. 이제 중국동포가 국내 체류 재외동포정책의 중심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동안 정부가 국민의 일자리 잠식을 막기 위해 방문취업(H-2) 동포의 체류 규모를 30만 3천명으로 제한하였지만 중국동포의 한국체류 전체규모는 크게 줄지 않았다. 많은 중국동포가 방문취업 외에 재외동포(F-4), 영주(F-5) 등의 체류 자격을 얻는 등의 방법을 통해 중국동포의 체류 총량이 크게 감소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기존에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통한 중국동포 체류 규제 방침이 와해되고 국내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보호하고자 한 조치 또한 무력화 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기존에 시행되어 오던 중국동포의 재외동포 체류자격 확대 정책을 제한하기도 하였다. 정부는 기존에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간병인 또는 가사보조인으로 1년 이상 동일직장에서 근속한 사람 등에게 재외동포 자격변경을 허용하던 정책을 변경하여 지방 제조업, 농축산업 등의 한 직장에서 최소한 2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자격변경이 가능하도록 한정하고 기존의 간병인, 가사보조인은 자격변경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도 하였다.

동포들에 대한 재외동포 자격변경 기준을 엄격하게 변경한 이러한 정책은 “중국동포에게 폭 넓게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할 것인가의 문제는 충분한 사회적 여론 수렴과 공감대 형성과정이 반드시 선행될 필요”가 판단하는 고용노동부의反动포적인 정책기조 때문이기도 하다.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중국동포들일지라도 중국동포의 체류규모가 증가하면 내국인 고용보호가 어려워진다는 기존의 해묵은 단순노무 시비 때문이다. 재외동포법이 시행된 지 20년이 경과하는 동안 동법에 대한 위헌시비 파동을 거쳐 동포에 대한 차별적 문제를 해소하여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하여서



는 시민사회와 정책당국이 이미 모두 동의한 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동의에 기초하여 정부는 그 동안 고용허가제 특례조치를 통하여 중국동포들의 요구를 수용하려고 노력하였고 또한 재외동포법의 전면 적용을 위한 예비적 단계로 방문취업제를 도입 시행하기도 한 것이다. 그리고 2009년부터는 방문취업 자격자들을 적극적으로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줌으로써 중국동포에 대한 재외동포법 차별적용의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소해가고 있었다. 그런데 다시 해묵은 주장인 “사회적 여론 수렴과 공감대 형성과정의 반드시 선행될 필요” 하다는 것은 그 동안의 정부가 시행한 중국동포 포용정책의 근거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2012년 4월 법무부는 중국동포 등에 대한 재외동포(F-4) 자격부여 확대정책을 통하여 국내 공인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 이상) 소지자(단, 내국인 일자리 보호를 위해 건설 분야 제외)에게 재외동포 자격부여하고 또한 국내 체류동포의 만19세 이상 만25세 미만 자녀에 대한 입국기회를 확대하여 국내에 합법적으로 장기체류 중인 자의 만19세 이상 만25세 미만 자녀에게 1년간 유효한 단기일반(C-3-1, 90일) 복수사증 발급하고 이들도 기능사 자격을 취득할 경우 과감하게 재외동포(F-4)자격을 부여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 정책은 시행과 동시에 방문취업 만기자 재입국정책으로 인해 한국 계속 체류 및 취업이 불가능한 동포 및 그 동안 한국 입국의 길이 근본적으로 차단되어 있던 차세대 젊은 세대에게 매우 희망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졌다.

4. 중국동포의 미래

21세기 정보화·인재전쟁 시대에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700만 재외동포의 역량 강화 및 활용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중국·인도의 재외동포는 본국의 경제·과학 등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정부도 동포의 역량개발·활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재외동포, 특히 세계의 G2로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동포도 화교·인교 이상의 성장 잠재력과 능력을 갖추고 있으나 아직 이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정책이 보이지 않고 있다.

높은 잠재력을 갖춘 중국동포 역량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하면 우리 중국동포도 화교·인교와 대등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중수교 20년 동안 중국 조선족동포의 경제·사회적 역량이 많이 성장하였으나, 아직은 화교·인교(印僑)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중국동포들과 기업이 한 단계 성장·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필요한 인적 자원 개발 지원 정책 및 컨설팅 등의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잠재력이 우수한 중국동포 인재가 한민족 의식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최근에 중국동포들의 한국 유입이 급증하고 아울러 재외동포(F-4) 자격 부여 정책 등을 통하여 정주화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이들 중국동포 인력 및 우수인재 등을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1992.8월 한중 수교이후 중국동포 정책이 점차적으로 발전해 온 것은 사실이다. 취업관리제-방문 취업제-재외동포 및 영주자격부여 대상 확대 등, 그러나 2013년 현재 중국동포 문제는 아직도 미완의 정책으로 여러 가지 현안과 과제를 갖고 있다.

1 정체성의 문제

조선족인가? 중국동포인가? 분명히 한국어를 사용하고 심지어 경상도, 전라도 사투리까지 사용하지만 또 동시에 중국어도 유창하게 사용하는 경계선상의 집단이다! 이 정체성의 문제는 한국인들도 불명확 하지만 동포들 본인들도 불명확하다. 오늘 한국사회일각에서는 이들은 ‘중국인’이다. 라는 편견으로 조선족을 매도하기도 하고, 조선족 사회에서도 과연 한국이 우리가 조국인가? 의문을 표하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이모든 것은 우리 민족의 역사적 결과물이기도하고, 한편 중국정부의 유능한 소수민족 정책의 결과물이기도하다!

오늘날 중국동북3성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동포들이 이주한 역사를 보면 불과 100여 년 전에 이주한 것이다. 즉, 이들이 고구려의 유민이거나, 아니면 발해의 유민이 아니다, 19세기말, 20세기 초, 특히 일제 강점기에 집단적으로 이주하기 시작한 분들이다. 20세기 초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으로 미국인민 노동을 출발한분들이 재미동포의 효시라면, 같은 무렵 간도로 심양으로 만주벌판으로 이주를 떠난 우리의 조상들의 후손이 오늘날 중국동포이다. 오늘 날의 연변조선족 자치구, 즉 간도지역은 주로 함경도등 북한이 고향인 분이 많고, 그 외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 의 조선족 집거지역을 보면 경상도, 전라도등 남한을 고향으로 한분이 많다. 그래서 이분들 가운데도 유창하게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사투리를 사용하기도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이주의 뿌리와 역사를 오늘날 한국인도 잊고 있고, 재중동포 본인들도 잊고 산다. 그저 중국의 한 소수민족으로서의 정체성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

문제는 앞으로이다. 그저 강대국 중국의 한 소수민족으로 영원히 살수도 있다. 아니면 한국인의 일원으로 완전히 귀국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정책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200만 중국동포들을 위한 전략적 정책도 부재한 것 같고, 뚜렷한 입장도 부재한 것 같다. 중국동포 스스로도 마찬가지이다. 같은 민족이기에 어찌해서든지 귀국하여 살겠다보다, 그저 흘러가는데로 사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유리한 쪽으로, 환율과 임금이 유리한곳으로!

분명한 것은 미래는 준비한 자의 것이고, 미래는 전략적으로 선택하기 나름이다. 이제 와서 중국의 모든 집과 농토를 버리고 동포들이 100% 귀국 할 수도 없고 귀국해서도 안 된다. 라고 본다. 그러나 한국민족의 입장에서는 이들이 뚜렷한 한민족의 정체성과 애국심을 갖고 재중동포로서 중국과 한국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즉, 한국정부는 이들에 대한 포용적인 정책은 물론



장, 단기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2,3세교육, 공동체 유지등 이들이 한민족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살게 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한민족의 이익에도 절대적으로 유리할 것이다.

더 나아가 200만 중국동포를 우리 편으로 포용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재중동포보다 더 이질화된 북한 동포들을 포용 할 수 있겠습니까? 동포문제는 단순히 노동력의 관점에서 노동부에서 다루거나, 외국인의 관점에서 법무부나 외교부에서 다룰 것이 아니라 민족적 관점에서 통일부에서 다루어야 하리하고 생각한다.

2 체류불안에 대한 문제

200만 중국동포의 자유왕래의 문제와 겹쳐 통제 불능의 상황이 올 것이다?! 지금 한국정부는 30만면 정도의 쿼터제로 재중동포의 수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최소한 H-2비자 만기자 부터 점차적으로 F-4로의 전환이 바람직하다. 현재 H-2비자는, E-9와 별반차이가 없습니다. 즉, 동포가 아닌 외국인노동자로 단순, 단기순환노동자일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5년 만기가 되면 돌아가야 합니다. 즉 현재로서는 한국에서 번 돈을 재투자할 수도 없고, 장기적인 거주 계획을 세울 수도 없는 것입니다. 가족들도 자녀도 다 흩어져 살아야 합니다. 결국 한국에서 번 재화도 그대로 중국으로 송금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정부도 손해입니다. 동포들의 재화가 한국에 재투자되고 한국이든, 중국이든 온가족이 모여 살아야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F-4로 변경되어야 동포사회도 안정되고, 국가적으로도 외화유출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국적을 소유한 중국동포로 자리매김함이 현재로서는 이상적이다.

3 취업제한에 대한문제

현재 F-4비자, F-1, C-3비자 등은 취업을 할 수 없거나, 극히 제한적이다. 그중에서도 F-4비자일 경우 단순노동을 제한하고 있다. 이것은 극히 비상식적인 정책이다. 동포 중에도 중국에서는 교사, 공무원, 의사, 법관 출신 등 고위전문직에서 근무하다온 분도 많다. 그렇지만 한국에서의 상황은 또 다르다, 그것은 마치 70-80년대 한국의 전문직에서 일하다 미국이민에 오른 분들이 자기전문과 상관없이 미국에서의 직장이, 슈퍼, 세탁소, 청소 등 단순노동에서부터 시작한 것과 마찬가지로 일 것이다. 만일 미국에서 한국이민자들에게 전문직이 아니면 취업 할 수 없다고 했다면 미국이민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내국인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지만 아직도 현장에서는 특히 3-D 업종일수록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고, 더 나아가 이와 같은 발상자체가 아직도 동포를 같은 민족으로서 생각하기보다는 외국 인력의 관점에서 단순한 노동력의 관점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다. 그럼으로 F-4비자 의 취업제한 정책은 즉각 수정해야한다.

4 미등록 동포문제 해결

현재 적어도 2007년 방문 취업제 이전의 모든 출입국사범은 사면 조치하는 것이 맞다. 강, 절도 등 형사범이 아닌 한, 비자와 연관해서, 체류나 연장등 때문에 불법체류자로 전락한 경우에는 대승적 견지에서 사면하고 다시 기회를 주어야한다. 왜냐하면 이모든 것이 동포로 조국에 들어와 살기위한 몸부림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7년 이후 중국동포의 불법 체류율이 여타 나라에 비해 현저히 낮다. 이것은 곧 합당한 조치가 초기부터 시행되었다면, 위명여권, 위장 결혼 등 비자관련 위법이나, 불법체류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으로 한국정부는 동포문제를 단순히 외국 인력의 문제가 아닌 민족통합, 민족포용의 관점에서 장·단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5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일?!

재외동포문제는 중앙정부에서만 해결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지자체 차원에서, 마을 공동체에서 할 수 있는 일들 더 많다. 그것은 중국동포들이 바라는 것이 단순히 비자, 제도, 법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법 이전에 역사인식의 문제요, 국민적 의식개선의 문제이다. 동포들은 동포로서 대우받고 싶은 것이다. 민족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당당히 서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들에게 민족공동체구성원으로서 정체성을 회복시켜주고, 더 나아가 동포로서의 권리를 찾게 해주며, 거기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경기도에서 할 일이다.

〈참고 자료〉

1. '북간도 기독교 민족 독립 운동', 한국기독교 장로회 인천노회, 박상필
2. '재외동포의 국내 체류 지원 정책 토론회', 국회의원 김명연, 이주정책 포럼 준비위원회
3. 제4회 이민정책포럼 '한국의 미래 이민정책에서 찾다', 성결대학교





토론문

중국동포의 역할과 사회통합

김용선 (한중문화콘텐츠연구소 소장)

1. 들어가면서

이천영 교장과 이정혁 센터장 두 분은 모두 중국동포(고려인)에 대한 재외동포체류자격 확대, 재외동포비자 소지자의 단순노무행위에 대한 취업제한 완화, 민족정체성 확립 등 외국인근로자 답론이 아닌 동포에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이천영 교장은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이 국내체류 고려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되고 보육비와 교육비 지원, 영주권 혹은 국적 취득 시 고려인과 동포에 대한 특혜 부여를 주문했다.

이정혁 센터장은 중국동포 인력 및 우수인재 등을 활용하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 인적 자원 개발 지원 정책, 컨설팅, 교육지원 등을 강조하고 불법체류 동포의 전면 사면을 요구했다.

한국어 관련 내용을 제외하면 중국동포와 고려인은 한국에서의 체류, 생활, 취업 등 대부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

중국동포와 관련하여 몇 가지 필자의 생각을 추가해 본다. 물론 추가 내용 중의 많은 부분은 고려인에게도 적용된다.¹⁾



1) 본문의 여러 제안 중 일부는 필자가 참여한 ‘서울 거주 중국동포 실태 조사 및 정책 수립 보고서’ 를 활용했다.

II. 중국동포의 역할과 사회통합

1 중국동포의 역할

1) 경제적 역할

중국인 관광객 400만 명 시대를 맞이하여 한국 정부는 중국관광객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일에 중국어와 한국어에 능통한 중국동포 인력들이 대거 투입되고 있다. 중국어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취득한 동포들은 중국과 한국문화에 익숙하고 소통의 문제도 없을뿐더러 외화벌이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중국관광객의 대거 유입으로 이와 관련된 백화점, 면세점, 호텔, 골프장 등 많은 업체에서 중국동포들을 고용하여 수입을 늘리고 있다. 한중경제교류에서는 물론 제조업, 외식업, 건설업 등 산업에서만 경제적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관광업, 서비스업 등에서도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부각되고 있다. 아울러 법적지위의 안정화와 한국에서의 가족단위 거주, 부의 축적 등 이유로 중국동포들은 한국에서 외화송출의 주범(?)이 아닌 납세하고 중국자본의 투자유치와 외화벌이의 앞장에 서고 있다. 심지어 요즘은 중국에 사놓은 부동산을 처분하고 한국에 아파트를 구매하는 동포들도 대폭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2) 노동시장에서의 역할

이민을 가는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국가의 인적 자원이 감소되는 반면에 이민 수용 국가는 각 분야의 인적 자원을 공급받기 때문에 이득을 보게 된다. 한국은 1990년대 초 부터 많은 재외동포가 모국으로 귀국하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한국 경제가 발전하여 이제 한국도 살기에 매력적인 국가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한편, 한국은 급속한 고도 경제 성장 덕분에 고임금 고소득 시대로 진입하였지만, 1990년 중반부터 3D 산업분야에 노동력 부족현상이 발생하였다. 그 결과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값싼 노동력을 동남아 또는 서남아시아로부터 수입하였다. 한국의 임금수준이 1990년 초반에 급격하게 상승하였기 때문에 서비스산업을 비롯하여 한국인이 기피하는 소위 3D업종을 중심으로 한국어 구사에 문제가 없는 중국의 조선족동포 근로자들을 많이 고용하기 시작하였다.

한국은 언어소통에 문제가 없으며, 동일한 문화적 배경을 공유함으로써 신속한 노동시장 적응이 가능한 저임금의 중국 조선족동포 근로자의 고용을 선호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 중국 조선족동포 근로자들이 대거 한국의 서비스 산업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되면서, 재외동포인 조선족은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일함으로써 한국 경제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온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다른 나라의 재외동포와는 완전히 다른 현상으로 한국은 중국거주 재외동포가 도리어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여 한국의 경제 성장을 유지하고 노동시장의 애로를 해소하여 주고 있다.



3) 남북통일의 가교 역할

한반도 주변 국가들에 흩어져 살고 있는 재외동포 사회 특히 조선족동포 사회의 건전한 발전은 한반도 남북의 접촉과 관계개선, 나아가서는 통일문제까지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국과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은 지정학적 측면에서 다른 어느 지역에 있는 해외동포들 보다 더욱 밀접하고 역동적인 기능으로 남북한 관계개선에 매체 작용과 완충 역할을 해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조선족 사회는 사회주의 문화와 자본주의 문화 양쪽에 모두 익숙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남과 북 간에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내왕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조선족의 이점을 활용한다면 반세기가 넘는 분단의 세월 속에서 서로 다른 이념에 기초한 상이한 문화체제를 갖고 있는 남북한의 문화를 양국이 수용할 수 있는 문화 신호로 전달함으로써 남북 상호간에 동질적인 문화의 소통과 융화를 이루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조선족 사회는 남북한과의 교류에서 기본상 중립적 입장을 취하고 있으므로 남북 간 문화충돌에서 우호적인 완충지대(Buffer Zone)로 부각되고 있다.²⁾

이러한 완충적인 역할은 비단 조선족에게만 한정되지 않는다. 세계화와 지역화가 동시에 확장되고 있는 오늘날 가장 중요한 국제관계 이슈로 등장한 ‘초국경적 협력(Cross-Border Cooperation)’에 있어서 재외동포는 매우 중요하고 유능한 가교역할 집단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중국과 일본, 러시아 및 미국 등 한반도 주변의 4대 열강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 사회를 네트워킹하고, 그들에게 한반도와 각 주변 국가들 상호간에 중재적 매개적 역할을 감당하도록 고취시켜 나가는 것은 한반도의 미래와 동북아공동체 역사 발전에 매우 소중한 자원이 된다.

2 재외동포법 전면 시행

1) 법적 근거

- 생략(이천영 센터장의 글에 상세히 나와 있음)

2) 현실적 근거

법무부 출입국통계월보에 따르면 2013년 9월 현재 한국 체류 조선족이 46만9,548명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10여 만에 이르는 한국국적 회복 및 취득자를 포함한다면, 한국에 살고 있는 중국동포 최소한 57만 명 이상이다. 이는 전체 중국 조선족 192만 명 가운데 30%에 가까운 수치로 10명 중에 3명이 한국에 살고 있는 셈이고 이 중 대부분은 성인이다.

2) 이승률, “한반도의 남북한 협력과 해외 코리안 - 중국 및 일본 조선족사회의 역할 특징”, 조선족연구학회 2001년도 전국학술대회, 제4회 재일중국조선족국제심포지움, 『일중협력시대의 코리안』, 2011, 12, 17.

또한 산해관 이남으로 이주한 조선족의 수가 50~55만 명으로 추정되고 18만 명의 조선족이 한국 외 다른 나라에 살고 있다고 박광성은 추론했다.³⁾ 전체 192만 명에서 한국 약 57만 명, 한국 외 해외 약 18만 명, 그리고 산해관 이남 50~55만 명을 제외할 경우, 동북지역 조선족의 실제 거주인구는 60만 내외로 추산된다. 앞으로 한국에 신규 입국할 중국동포가 많지 않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 법무부에서 중국동포를 대상으로 실행한 방문취업제 전산추첨에서는 10만 명이 신청하여 7만 명이 전산추첨 되어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입국하게 된다. 오는 12월 20일에는 추가로 8만 명을 추첨한다. 추첨자 중 상당수가 가족상봉, 비즈니스 혹은 단순 비자마련 차원에서 신청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국내 장기체류하는 중국동포는 아무리 많아도 최대 70만 명 선일 것이다. 즉, 중국동포들에게 재외동포법을 전면 적용하더라도 큰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민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법적지위 문제이다. 중국동포정책은 재외동포법을 적용해 실시하면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3 정책 홍보

1) 정책홍보의 분산

그동안 정부는 중국동포와도 일부 해당되는 외국인 정책, 다문화 정책을 발표, 시행하였다. 그런데 정착 문제는 많은 좋은 정책이 홍보의 부족이나 효과적이지 않은 홍보로 인해 중국동포들에게 전달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리고 중국동포들은 인터넷 미숙 등 이유로 국내 체류, 취업, 생활, 교육, 의료, 금융, 유학, 관광, 창업 등 분야에서 자신한테 필요한 정보를 잘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동포 관련 정책 및 일상생활에서의 정보 습득 부재로 실생활에서 상당한 불편을 겪게 되며 필요하거나 좋은 정책이 있어도 몰라서 간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이 국내에서, 경기도에서 거주하면서 관련 정책과 정보를 쉽게 접촉할 수 있도록 산재해 있는 정보를 취합하여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정책의 효과적인 전달을 위한 몇 가지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2) 재한동포언론매체 활용

현재 한국에는 20여 종류의 재한중국인, 중국동포 관련 신문사가 있다. 중국동포들은 동포 관련 정책, 한국생활상식 등을 주로 이들 신문을 통해 접하게 된다. 한글 신문으로는 중국동포타운신문, 한중동포신문, 동북아시아신문, 한민족신문, 중국동포신문, 동포세계, 중한뉴스, 흑룡강신문, 길림신문 등이 있고 중국어신문으로는 한중법률신문, 정보신문 등이 있다. 이들 신문, 특히 중국

3) 박광성, 「초국적인 인구이동과 중국조선족의 글로벌 네트워크」, 『재외한인연구』, 제21호, 2010, 361-362쪽.



동포타운신문과 같은 경우는 중국동포들이 집거하는 서울 지역은 물론,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 성남시, 안산시, 시흥시, 광명시, 부천시, 의정부시, 고양시, 안양시, 군포시, 오산시, 용인시 등 중국동포들이 집거하는 대부분 지역에 신문을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이들 신문과 조선족대모임과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하여 정책 홍보를 하게 되면 가장 정확히 전달되게 되고 가장 많은 동포들이 접하게 될 것이다.

3) 재한동포단체 활용

2007년 방문취업제와 2008년 재외동포자격 부여를 시작으로 중국동포들은 법적지위, 즉 체류자격 문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한국 사회와 마찬가지로 수많은 단체, 동호회를 설립했다. 4대 단체로는 중국동포한마음협회, 재한동포연합총회, 귀한동포연합총회, 재한조선족연합회 등이 있으며 이외에 재한조선족유학생네트워크, 한민족연합회, 중국연맹총회, 다문화축구총연합회, 대한아리랑경로당연합회, 중국동포문인협회, 중국동포교사협회, 재한조선족청년연합회 등 100여 개 단체가 있다.

이들 단체들은 적게는 수십 명, 많게는 수천 명이 소속돼 있어 문화행사, 체육행사, 민속행사 등 프로그램 운영뿐만 아니라 정책 홍보,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등 많은 경우에 활용을 하게 되면 최대한의 홍보효과를 이룰 수 있다.

4) 동포집거지 집중 홍보

경기도 용인시(김량장동), 경기도 수원시(지동, 세류동, 매산로1가, 매산로2가, 고등동, 인계동, 영화동), 안산시(원곡동), 시흥시(정왕동), 화성시(향남읍 평리), 고양시(일산동), 성남시(성남동, 수진동, 신흥1동), 군포시(산본동), 안양시(안양동, 박달동), 광명시(광명동), 광주시(실촌읍 곤지암리), 부천시(심곡본동), 오산시(오산동), 이천시(중리동), 평택시(안중읍, 평택동), 포천시(신읍동) 등은 중국동포들의 집거지이다.

위와 같은 동포 집거지역에 도정, 시정 홍보 게시판을 신설하여 활용하면 좋은 홍보효과를 보게 될 것이다.

4 정착 지원

1) 보육비, 교육비 지원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내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출산장려책도 필요하지만 국내에서 장기체류하고자 하는 젊은 동포들의 자녀보육, 교육 지원도 중요할 것 같다. 기타 외국인, 다문화

가정과 분명히 다른 정서, 다른 문화와 정체성을 가진 이들에게 단순 외국인정책 혹은 다문화 정책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과 많이 떨어져있다.

2) 중국어 교육 지원

한국인 주민과 중국동포들의 화합은 서로의 장점을 나누는데서 시작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언어”의 교류다. 현재 밀집지역의 학교에는 중국동포의 자녀들이 재학하고 있으며 그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 경우 학교는 매우 중요하고 자연스러운 문화교류의 장이 된다. 학교라는 공간을 통해 학부모가 된 중국동포 주민들과 한국인 주민들이 중국어와 한국어를 교류하는 프로그램 만들 수 있다.

3) 창업 지원

11월 3일부터 한국창업전략연구소와 중국동포한마음협회 등 단체들이 ‘중국동포창업아카데미’를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2기 교육을 진행 중인데 전체 교육생 150명 중 대부분이 30대, 40대 중국동포들이다. 한중 무역액 3,000억 달러 시대를 맞이하여, 한중FTA 체결을 앞두고 중국동포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고 창업에 준비된 동포들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 이미 전국적으로 기업체 및 가게를 운영하는 동포들이 3,000명⁴⁾이 넘는다.

법적지위의 안정, 그동안 축적된 자본과 경험, 노하우, 한중 양국 간의 전례 없는 경제교류 확대, 한중 양국 언어와 문화에 익숙한 천성적 우세 등은 동포들의 대규모 창업 시대를 열고 있다. ‘창업아카데미’, 정책 지원, 환경 조성, 투자유치 인센티브제, 창업 지원 등을 통해 한중 경제문화교류에서의 중국동포들의 역할을 향상하고 한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 좋을 것 같다.

4) 커뮤니티 지원

최근 들어 비교적 큰 규모의 행사를 정기적으로 치르는 단체들이 나타나고 있다. 단체들의 규모가 커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실적을 인정받아 관청에 등록하는 단체도 생겨났다. 단체들은 중국동포의 권익신장과 이미지 쇄신 그리고 한국사회 정응 정착에 역점을 두고 있다. 아직까지 관청에 등록된 단체는 많지 않지만 동향모임, 동창모임 수준을 넘어 직능별 단체로 발전해가는 과정에 있다. 일부 단체들은 중앙정부 혹은 지자체의 지원 사업으로 선정되어 민간단체로서의 공익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4) 필자가 2009년, 2010년 전국 범위에서 조사한 중국동포 업체리스트를 기초로 추산.



중국동포 단체들이 이처럼 급성장하게 된 데는 동포언론의 역할이 크다. 중국동포 언론과 중국동포단체는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동포언론사도 20여개 되지만 대표적인 언론사로는 한중동포신문, 동북아신문, 중국동포타운신문, 길림신문, 흑룡강신문, 한민족신문 등이다. 대부분 무가지로 배부하는데 이는 동포들이 한국의 최신 정책을 쉽게 접하고 한국사회를 이해하고 한국사회에 적응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처럼 동포사회에 직능별 다양한 민간단체와 여러 언론사가 있음으로 하여 커뮤니티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하지만 중국동포사회가 발전하고 동포사회에 대한 내국인들의 인식수준이 높아감에 따라 중국동포 단체 및 언론에 대한 역할과 기대가 높아졌다. 특히 국내 시민단체들과의 교류 및 연대에 대한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동포 단체와 언론사는 여러 면에서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다. 가장 힘든 부분은 단체 리더십 부재, 상근자 부재, 경영상 어려움, 사무공간 부족 등이다. 따라서 경기도 차원에서 동포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중국동포 단체 및 언론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단체 임직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사무공간 제공, 민간단체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등등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

5 사회통합

1) 한글이름 사용

중국동포들은 중국에서 한글이름을 사용한다. 특히, 연변조선족자치주와 같은 자치지역의 중국동포는 정부에서 발행되는 신분증에 위에 한글, 아래 중국이름을 사용하도록 법적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중국동포들은 고국인 한국에서 한글이름이 아닌 중국식 발음의 영어 이름을 사용해야 한다. 외국인등록증이든,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증이든, 영주권이든 모두 그렇다. 필자의 경우, 중국 신분증에는 위에 김룡선, 아래에 金龙善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거소신고증에는 JIN LONGSHAN으로만 표기되어 있다. 금융, 통신, 인터넷 등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중국에서도 사용하는 한글 이름을 고국인 한국에서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H-2, F-4 등 비자는 재외동포에게만 발행되는 비자이다. 동포로 인정하였으면 한글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름에서부터 외국인으로, 이방인으로 이질감을 갖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외국인등록 시, 국내 거소 시 기초질서 등 정착교육 실시

외국인이 많아지면서 외국인 범죄가 큰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중국동포들과 관련된 범죄 뉴스가

언론매체를 통해 많이 보도되고 있다. 물론 전체 외국인 중 중국동포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겠다. 기타 외국인들도 마찬가지로지만 중국동포들도 문화의 차이, 습관의 차이, 제도의 차이로 금방 입국하였을 경우 무단횡단, 고성방가, 쓰레기 무단투기 등 기초질서 부분에서 지역사회와 갈등을 빚게 된다.

현재 한국에 입국하여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에게 기초질서 교육을 하는 기관은 아무 곳도 없는 상황이다. E-9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와 H-2방문취업 동포들에게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각기 다른 취업관련 3일 교육을 하고는 있으나 역시 기초질서 교육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지역사회와의 갈등과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사회통합차원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3개월 이상 장기체류를 희망하는 동포를 포함한 모든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기초질서 교육을 의무화하고 기타 교육, 의료, 금융, 교통, 통신, 창업 등 한국생활상식 교육은 선택으로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기초질서교육을 이수해야만 외국인등록증, 혹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3) 민속, 전통문화를 통한 동질감 부여

뿌리가 같은 민족이지만 장기간 사회주의 체제와 중국이라는 다민족국가에서 성장한 객관적 환경은 중국동포와 한국인 사이의 피할 수 없는 문화적 차이를 조성하였다. 서로에 대한 이해 부족과 소통 부재는 더욱 많은 오해를 가져오고 일부 언론의 편파보도는 차이를 떠나 차별과 멸시를 불러오고 있다. 중국동포들의 한국사회 장기체류 내지 정착은 이제 기정 사실이 되고 있다. 사회통합 차원에서, 갈등과 차이를 해소하고 화합과 상생의 환경을 조성하려면 서로에 대한 이해, 소통이 우선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민속, 전통문화를 통한 동질감 부여인 것 같다. 함께 참여하는 각종 민속, 전통문화 행사를 통하여 소통하고 이해하는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재한동포사회에는 재한중국동포장기협회가 설립되어 한국에서의 각종 대회에서 우승하고 있고 국악 전공자들이 강원도립국악단 등에서 전속 가수로 활약하고 있으며 한민족음악동호회 등 조선족 음악단체들도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동북3성의 문화예술 인재의 유출과 인구감소, 한국으로의 대량 유입, 자금난, 조선족 전통민속 문화의 계승 발전에서의 위기감 등은 재한중국동포 사회에서의 큰 화제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로 최근 중국동포한마음협회, 재한동포연합총회 등 재한중국동포 단체들이 단체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고 중국 내 모 조선족 기업인은 협의회를 통해 2억 원을 후원하여 재한조선족 문화관 설립을 돕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기도 하였다. 또한 일부에서는 조선족문화관과 함께 조선족이주박물관, 조선족민속박물관의 설립도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동포어린이예술단 설립, 재한중국동포민속문화축제 등도 기획하고 있는 중이다.

민족문화의 보존과 계승은 물론 국내 사회통합 차원에서도 재한조선족문화관 설립이 필요하고



조선족 민속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왜냐하면 위에서 언급하였 듯이, 민족문화 보존 측면에서도 당연하고 조선족과 한국사회가 동질감을 가질 수 있는 가장 쉬운 분야가 민속 예술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4) 한국사, 한국문화 교육 실시

중국동포사회와 한국사회가 일부 서로 이질감을 느끼는 또 하나의 이유가 중국동포들이 국사와 한국문화, 자신의 뿌리에 대한 이해 부족이다. 대부분 중국동포들이 중국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한글 교육은 받았으나 한국사 교육은 받은 적이 없다. 한국역사 관련 내용은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세계사 부분에 잠깐 등장할 뿐이다.

중국동포들을 위한 한국사, 한국문화 교육, 그 자녀들을 위한 조선족이주사 교육 등을 통해 정체성 수립에 도움을 주고 한국정착생활에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또한 상술한 조선족이주박물관 등을 통해 내국인들에게도 중국동포에 대한 이해를 넓힐 필요가 있겠다.

Ⅲ. 나가면서

외국인이면서 다문화이고 동포인 재한중국동포는 외국인도, 다문화도 아니길 바란다. 더 이상 외국인근로자담론과 다문화담론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지 않고, 동포로서 인정해주고 ‘중국동포 국내체류특별지원법’ 을 제정할 것을 바라고 있다.

서울시 거주 25만 명의 중국동포들 중 가장 많이 취직한 곳은 외식업 등 서비스업이고, 경기도 거주 20만 명의 중국동포들 중 가장 많이 취직한 곳은 제조업이다. 서비스업 분야, 제조업 분야 인력난 해소에서 중국동포들은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한중FTA를 앞두고, 신규입국 할 중국동포들이 줄어들고 내년 정점을 찍게 될 상황에서 아직도 “국내 노동력 시장 잠식 우려” 라는 고용노동부의 구태 논리는 더 이상 중국동포의 한중 경제교류 및 국내 경제발전에서의 기여 확대를 내다보지 못하는 역사대적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토론문

재외 동포정책의 현황과 전망 (경기도를 중심으로)

양한순 (아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위의 두 발제문은 오늘날 귀환한 재외동포들이 한국에서 처한 현실에 대해 인권과 “동포”의 차원에서 생생하게 증언하고 분석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 글들은 귀환동포들 살아가고 있는 구체적 삶의 현장과 정부정책과의 거리가 어떤 것인지를 잘 드러내주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정책을 도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안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현실적이고 건설적인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가운데 우선, 이천영 교장의 발제문은 사례를 통해 국내체류 고려인들이 어떠한 곤경에 처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발제자는 무엇보다 그 곤경의 원인을 제도적 미비라는 데서 찾고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귀환동포 지원법”의 제정을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제도적 지원의 기반은 “역사의식”과 “민족애”라는 의식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구 소련연방 붕괴 이후 무국적자가 된 동포들이 2,000여 명에 이른다는 것을 지적함으로써, 이들의 귀환문제가 얼마나 시급한 것인지를 상기시켜주고 있다.

이정혁 소장의 발제문은 중국동포의 오늘날 국내 체류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잘 보여주고 있고 아울러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개선점들을 제안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역시 매우 건설적인 글이다. 특히, 정체성의 문제, F-4비자의 확대문제, F-4비자의 취업제한 문제, 미등록 동포문제 등 모두 시급하고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발제자는 역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기본적 입장은 “외국 인력”의 문제가 아닌 “민족통합”과 “민족포용”의 입장이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본 토론자는 이런 논의와 제안이 현실화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몇 가지를 더 고려해 보고 싶다.



- 1) 우선, 재외 동포의 귀환이주에 대한 정책에 관해서는 한국과 같은 “속인주의” 적 전통을 강하게 갖고 있는 독일의 사례를 검토해 보는 것도 유용할 것 같다. 독일은 한국이나 일본과 달리 국내 노동력의 부족을 충원하려는 경제적 고려보다는 재외동포들의 곤경을 해결해 줘야 한다는 “민족애” 적 고려를 먼저 한 국가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2차대전 직후에 중부와 동유럽에서 쫓겨난 1,200여만명의 독일동포를 귀환시키게 된다. 그리고 냉전시기인 1950-1987년 사이 동유럽 특히 폴란드와 루마니아에서 독일인 160만명을 귀국시킨다. 그 뿐만 아니라 냉전 이후의 시기인 1988년부터 1996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에는 구 소련지역을 중심으로 230여만 명이나 되는 독일인의 귀환을 받아 주었다. 이렇게 귀환하게 된 귀환동포를 “아우스지들러(Aussiedler)” 라고 부르는데, 1950년에서 1999년에 이르는 기간에 입국한 아우스지들러가 400여만 명에 이른다. 그리고 독일 정부는 이들에 대한 언어교육, 거주, 직업교육, 그리고 여러 복지 혜택에 이르는 정착프로그램을 실시했다. 물론, 1993년부터는, 독일이라고 하기에는 그 자격이 의심되는 아우스지들러의 입국을 제한하고 독일어시험을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지만, 이것은 이미 수 많은 재외동포가 귀환한 이후의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같은 속인주의를 시민권의 기반으로 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독일의 사례를 참조해서 재외동포에 대한 포용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원이 필요한 “무국적자” 고려인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 2) 우리가 고려해 봐야 할 또 하나의 문제는 국제 이주자의 체류와 관련된 규정을 제정할 때, 인간 사회의 기초 사회단위인 가족이 해체되지 않도록 가족 초청의 조건과 범위를 적절히 조절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것은 인권의 차원에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야 할 영역이다.
- 3) 재외동포의 귀환 문제는 새로운 정책의 도입에서부터 정책의 시행에 이르기 까지 많은 영역에서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한다. 예를 들어, 광주광역시와 고려인 지원 조례안은 매우 상징성 있고 획기적인 조례라고 판단된다. 하지만 이 조례에 따라 고려인 정책이 성공적이 되려면 다른 여러 가지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다른 재외동포와의 형평성이다. 예를 들어 중국동포의 경우 고려인과 마찬가지로 사할린동포나 북한이탈주민과 같이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원이 없다. 따라서 광주광역시의 조례 제정으로 인해 중국동포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가질 수 있다. 그러므로, 조례의 마지막 조항은 “이러한 지원이 다른 지역의 재외동포들에게도 확대되도록 노력한다” 라는 식의 표현이 있으면 더 많은 합의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4) 귀환동포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사회적 합의는 또한 일반 한국인들을 포함해야 한다. 한국인들 가운데는 “문화적 이질성” 혹은 “역차별” 의 문제 때문에 재외동포의 귀환을 반기지 않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나 홍보를 통하여 결국 일반 시민의 동의와 합의를 얻어가면서 진행해야 할 것이다.

- 5) “동포담론” 의 “다문화 담론” 과의 차별성 문제이다. 한국사회에 외국인 이주자들, 결혼이민자들이 늘어나면서 “다문화 담론” 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 이것은 다문화사회로 변모하고 있는 한국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귀환동포의 문제 또한 “다문화 담론” 속에 포함되어 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다문화 담론” 과 적절히 차별화된 “동포 담론” 이 지속적으로 생산될 필요가 있다.
- 6) 결국에는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의 차별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야 한다. 세계화와 더불어 많은 국가에서는 “속주주의” 적 시민권 개념이 확대되고 있다. 그것은 이주의 증가로 인해,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인권의 차원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리고 이런 차별의 해소는 바람직하고 이상적이다. 그런데 이런 차별의 해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병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 경제적 불평등이 지속되거나 확대되는 한, 한국인과 외국인노동자의 관계뿐만 아니라 일반 한국인과 귀환동포의 관계가 여전히 커다란 차별의 문제로 남아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가기 위해서는 바로한 사회 내에서 경제적 불평등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 7) 경기도의 실천의 하나로써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시도해 보는 것이 어떨까? 현재 서울시는 대림 2동에서 중국동포와 원주민이 함께하는 마을재생사업을 시작하고 있다. 이 사업에서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바로 주민들이 함께하는 공간(회관, 사랑방 등)을 갖는 일이다. 그 공동의 공간에서 새로운 문화를 생산하는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다. 경기도는 이러한 사업의 기초를 제공함으로써 (회관 설립 지원)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 경기도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어 본다면 좋을 것 같다.



경기도외국인정책 간담회 및
지원단체 활동가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정책 간담회 Ⅱ

이주아동의 현황과 정책

(경기도를 중심으로)

- 1 이주아동의 인권현황과 정책과제
- 2 패널 토론





이주아동의 인권현황과 정책과제¹⁾

신은주 (평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필요성

2011년 국제결혼은 29,762건으로 2010년 34,235건보다 13.1% 감소하였고 전체 결혼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1년 9.0%로 2008년 11.0%, 2010년 10.5%에서 다소 감소하였다(통계청, 2012). 그러나 다문화가족의 규모는 2012년 268천명에서 2020년 351천명으로 향후 8년간 31.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행정안전부, 2012).

이처럼 다문화가족이 증가하면서 그 이면에는 가족 간의 갈등 및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국제이혼건수를 보면 2005년 4,171건에서 2012년 14,450건으로 전체 이혼의 약 10%로 증가하였다. 또한 서울가정법원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서울가정법원에 접수된 이혼소송 중 다문화가족의 이혼소송 건수가 무려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서울신문, 2011. 5.2일자).

이와 같이 우리사회에서 다문화가족의 결혼해체문제는 이미 간과할 수 없는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특히 관심을 가져야할 것은 우리사회에서 증가한 다문화가족의 해체 및 가족변화와 함께 아동의 인권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2010년을 기준으로 이혼한 다문화가족 중 10.8%가 이혼당시 미성년자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 본 원고는 2013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를 요약한 것입니다. 아직 출판 배부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인용을 하지 마시기 부탁드립니다.



(통계청, 2010), 2010년 다문화가족의 이혼당시의 미성년자녀 총수는 1,513명으로 2000년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하였다.

또한 결혼형태도 점차 재혼 가족형태가 늘어나고 있다. 2005년 초혼이 71.8%, 재혼이 28.2%에서 2010년에는 초혼이 55.3%, 재혼이 44.7%로 재혼이 16.5% 증가하였다.(김유경 외, 2012: 101-12). 재혼 가족형태의 증가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새로운 이주아동의 증가를 가져왔다. 즉 외국에서 출생하여 성장하다 부모의 재혼으로 인하여 부모를 따라 한국에 동반 입국하는 가칭 '중도입국 자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은 기존의 다문화가정 자녀들이라 칭해지는 한국에서 출생한 결혼이주민들의 자녀들과는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중도입국 자녀에 대한 정확한 현황 및 통계자료는 아직 정확하게 집계되지 않으며, 중도입국 자녀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면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도 부모를 따라 동반 입국하여 귀화를 신청한 자녀 현황을 2010년부터 관리하고 있다. 2012년 1월말 현재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귀화를 신청한 만 19세 이하 부모 동반입국 자녀는 총 5,828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전체 다문화가족자녀 중 대략 4.5%의 비중으로 차지하며 지속적으로 누적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체류신분이 불안정한 경우가 많고 언어문제로 장기간 집에 머물면서 교육공백에 빠지는 경우가 흔하며 연령대에 맞는 일반학교에 입학할 능력이 안 되어 학교에 진입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은 진학 후에도 기초학력 부진과 학교 부적응으로 인하여 학업중단의 위기에 처하게 된다. 최근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도입국 자녀의 재학율은 4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급학교로 갈수록 진학률이 낮아지는 경향으로 보고되고 있다(전경숙, 2012).

최근 다문화가족지원법의 개정으로 다문화가족의 범위가 확대되었고 다문화가족 내 갈등 및 가정폭력 등으로 이혼·별거가 급증하고 있으며 배우자의 고령으로 인한 사별한 다문화가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한편, 결혼형태도 재혼가족의 증가로 가족형태가 변화하고 다양한 가족으로 재구성되고 있다.(김유경 외 2012: 27).

그럼에도 지금까지 이루어진 다문화 가족관련 연구는 결혼이민자의 초기정착과 적응에만 초점이 맞추어져서 다문화가족주기의 변화와 가족 내에 발생하는 역동적으로 다양한 욕구를 포괄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일반 결혼이민자 또는 외국인노동자, 이주아동을 중심으로 한 복지수준 및 욕구, 인권차별, 고용실태 및 노동권, 정책분석 등이 단편적. 개별적 측면에서 제한적으로 수행되었다.

따라서 급변하는 다문화사회에 대비하여 이혼 및 재혼다문화가족의 아동들이 어떠한 환경에서 양육되고 있으며 인권실태는 어떠한가를 가족형태의 변화와 연결하여 고찰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된다.

이주아동의 법적 권리를 매우 포괄적이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유엔아동권리협약과는 달리

국내 관련법에서는 이주아동이 갖는 법적인 권한이 매우 소극적이며 제한적이다. 재한외국인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그 적용대상을 한국에서 출생한 국제결혼 이민가족의 자녀로 한정하여 국제결혼 재혼가정 모친의 이전 결혼 소생 자녀 즉 중도입국 자녀의 경우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외국인의 출입국관리와 체류관리 등에 관한 조항을 담고 있는 출입국관리법은 이주아동에 대한 별도의 조항이나 규정이 없어 미성년 아동의 신변 보호나 교육권 보장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불법체류 노동자 자녀의 교육권이 의무교육인 중학교까지 확대되어 보장되고 있지만 의무교육 이외에 중도입국 자녀에게는 한국에서 출생한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주어지는 다른 다양한 복지서비스의 수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적극적 고려가 필요하다.

2 연구의 목적 및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가족 중 이혼 및 사별, 재혼가족의 이주아동의 인권실태를 파악하여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관점에서 통합적인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주아동 인권 관련 국내외 규범 및 법적 근거, 정책현황은 어떠한가?

둘째, 이주아동의 인권실태는 가족형태별(양부모(재혼포함), 한부모(결혼해체 후 이혼, 사별), 조손가족), 성별, 체류기간별, 국적별, 연령별, 학교별(정규학교, 대안학교, 탈학교), 한국어 능력별 요인과 관련하여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셋째,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관점에서 볼 때 이주아동의 인권문제와 대책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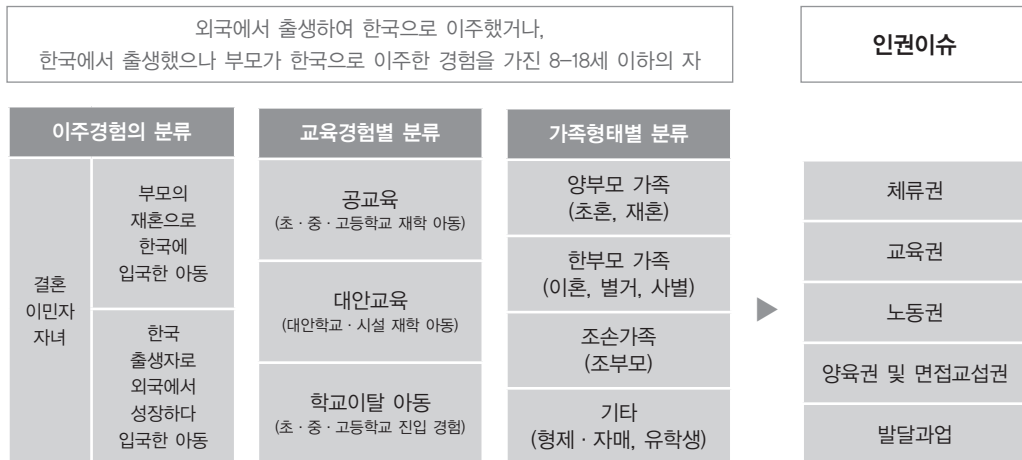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목적에 근거하여 이주아동의 개념을 [그림 1]과 같이 정리하였다.

[그림 1] 이주아동의 개념



〈이해원 외, 이주아동의 교육권 실태조사, 2010 수정〉

본 연구의 대상인 이주아동의 조작적 개념 정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령범위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조에 기초하여 아동을 8세-18세 까지로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인 이주아동의 인권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지를 이해하고 대답하기 어려운 저연령층은 제외하였으며 중도입국아동의 상당수가 18세 이상 20대 초반인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탈학교학생의 경우에는 24세까지 포함하였다.

둘째, 연구는 이주아동을 아동 본인 또는 부모의 이주경험에 따라 외국에서 출생한 아동이나 부모의 재혼으로 한국에 입국한 아동(이하 중도입국아동)과 한국에서 출생한 아동 가운데 중도에 외국에서 생활하다 재입국한 아동을 주 대상으로 한다. 셋째, 가족형태별 특성은 부모의 이혼 및 사별로 인해 한부모가정에 속한 다문화가정의 자녀와 부모의 재혼으로 입국한 중도입국 청소년이 주 대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족형태별 아동의 인권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부모의 이혼, 사별로 인한 한부모가족의 아동, 조손가족의 아동을 포함하며 부모의 재혼으로 인한 양부모가족을 포함하여 인권실태를 비교하고자 한다.

넷째, 학교 급별로는 정규학교에 재학 중(초·중·고), 대안학교, 탈학교 재학 아동으로 구분하여 유형별 인권실태를 조사하고자 한다. 따라서 한국의 공교육기관인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아동, 기타 대안학교 및 대안프로그램에 재학하고 있는 아동, 현재 학교에서 이탈하여 취업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아동으로 구분한다.

2 연구방법

1) 문헌 연구

2) 양적 연구

(1) 설문조사 : 국내 이주아동(350명)

설문지 조사 대상은 국제결혼 가정 중 이혼, 별거, 재혼가정 아동 350명에게 실시하였으며 그 중 283명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이혼가정의 아동은 이주여성자활기관, 이주여성인권센터 6개소, 아시아의 창, 다문화다민족통합어린이집 등 다문화가정과 관련된 기관의 협조를 얻었고, 재혼가정의 아동은 10개의 레인보우스쿨, 대안학교(서울, 경기지역), 사회통합 거점기관 경기 4거점, 안산 다문화 관련센터 사례관리 아동, 이주여성 자조모임을 활용하여 협조를 얻었다.

3) 질적 연구

(1) 심층면접

심층면접의 주요 내용은 인권 관련 양적 분석 결과를 보완하기 위하여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가족생활과 가족관계에서 오는 갈등, 언어와 문화의 차이, 한국사회의 적응과 차별, 학교생활, 친구관계, 진로와 취업에 대한 욕구 등 이주아동청소년들의 생활 현실을 심층인터뷰를 통해 분석하였다.

(2)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 FGI

전문가 회의는 2013년 4월부터 7월까지 2개월 동안 총 5회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이주아동들의 실제 현장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또한 이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연구의 내용 및 방향을 수정·보완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설문조사 결과

1)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의 설문에 참여한 이주아동은 총 283명이었다. 성별분포는 남녀 각각 비슷한 수준이지만, 남자 53%, 여자 47%로 남자가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나이는 8세~12세가 16.8%, 13세~18세 52.2%, 19세~24세가 31.0%로 조사되었다 즉 조사대상자의 과반수 이상이 13-18세의 연령대에 있으며 평균 나이는 16.45세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령대의 분포는 자아 정체감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로서 자기 자신에 대한 탐색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중요한 단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에서의 출생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는 81.6%가 외국에서 태어났다고 응답하였고, 한국에서 태어난 경우는 18.4%로 조사되었다. 조사대상자의 대부분은 외국에서 태어나 한국에 온 중도입국 청소년이 높은 비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응답자의 국적은 한국 37.7%, 중국 33.9% (한족 15.3%, 조선족 18.6%), 베트남 9.3%, 몽골 6.6%로 나타났다. 또한 이중국적을 소유하고 있는 응답자도 8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구체적인 이중국적 상황은 한족+조선족 2명, 한국+필리핀 2명, 한국+한족 1명, 한국+일본 3명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조사대상자는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국적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다.

외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부모의 입국 연도에서는 2006년~2010년 사이에 입국했다는 응답자가 41.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2001년~2005년 사이 25.9%, 1996년~2000년 사이 19.4%, 2011년~2013년 사이 8.6%, 1991년~1995년 사이 4.3%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출신국가를 묻는 질문에서 중국의 조선족과 한족에서 66.9%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이 중 조선족이 36.7%, 한족이 30.2%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베트남 9.3%, 몽골 8.4%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대상자 중 한족과 조선족이 가장 많았고, 베트남에서 입국하는 이주아동도 늘어나는 추세를 알 수 있다.

한국에서의 거주 기간을 살펴본 결과, 1년 이상~3년 미만이 41.9%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고, 3년 이상~7년 미만이 27.4%, 1년 미만이 24.2%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조사대상자는 현재 한국 적응 및 한국어 교육이 가장 필요한 시기로 볼 수 있는 3년 미만이 66.1%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에 들어오기 전 학력에서 중학교 졸업 30.5%, 고등학교 재학 중 19.7% 중학교 재학중 18.4%,

초등학교 재학 중 10.3%, 고등학교 졸업 6.3%로 나타났다.

국적취득 여부를 분석 한 결과 한국 국적으로 바꿀 계획이 있다고 52.2%가 응답하였으며, 영주권만 받을 계획이 있는 응답자는 24.4%로 나타났다. 국적 취득과 관련된 분석을 하면서 영주권만 희망하는 경우가 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국에서의 이중국적 인정여부와 문화의 차이로 사료되며 한국 국적이거나 영주권 받을 계획이 없는 경우도 4.9%, 모르겠다고 응답한 아동도 18.5%나 되어 자신의 미래진로에 대한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한국 국적 취득과 관련하여 모른다고 대답한 경우는 아동자신의 결정과 상관없이 부모님이 원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본국으로 돌아갈지 한국에서 정착할지에 대한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사료된다.

가족 유형을 알아본 결과, 양부모 가정이 61.5%로 가장 많았으며, 한부모가정 35.3%, 조손가정 2.2%, 기타 1.1%로 조사되었다.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 구성원을 묻는 질문에서 296명의 응답자 중 1인당 2.24명과 함께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형태의 변화에 따라 이주아동들은 친모와 사는 경우가 38.4%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새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 17.2%, 형제·자매 15.4%, 친아버지 13.2%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아버지의 국적을 묻는 질문에서는 한국 63.7%, 중국 27.1%(조선족 19.5%, 한족 7.6%)으로 한국 다음으로 중국이 높은 비율로 조사되었다. 어머니의 출신국가는 중국 60.7%(한족 31.4%+조선족 29.3%), 베트남 10.0%, 몽골 6.7%로 중국의 비율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응답자가 느끼고 있는 현재의 경제적인 형편에서는 중간정도이다가 65.6%, 어렵다로 느끼고 있는 응답이 17.9%, 어렵지 않다가 9.0%로 조사되었으며, 5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평균 2.78점(SD=.775)으로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제적인 형편은 나라별 문화나 생활방식에 따라 경제적인 형편을 주관적으로 느끼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응답자의 거주지역으로는 경기도가 58.6%, 서울이 25.7%로 수도권 지역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함께 살고 있는 어머니와 대화할 때 주로 사용하는 언어를 묻는 질문에서 한국어 22.5%, 외국어 20.4%로 나타났으며, 두 가지 언어를 섞어서 하는 경우가 57.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아버지와 대화할 때 주로 사용하는 언어는 62.0%가 한국어를 사용한다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두 가지 언어를 섞어서 사용하는 경우는 26.1%, 외국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11.8%로 조사되었다.

2) 한국어 실력과 모국어 실력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된 척도는 “전혀 못함-조금 못함-보통-잘함-매우 잘함” 으로 구성되어 조사함.



2) 학교생활

이주아동들의 학교생활과 관련해서는 현재 정규학교 및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이주아동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학교에서 겪는 어려움은 무엇이며, 학교폭력의 경험 유무, 향후 진로계획과 학교에 다니지 않는 이주아동들에게는 어떤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였는지도 조사하였다.

응답자의 한국어 실력을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각각의 평균값은 말하기 3.45(SD=1.12), 듣기 3.61(SD=1.07), 읽기 3.52(SD=1.06), 쓰기 3.29(SD=1.13)로 잘하는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이주아동의 모국어 실력을 5점 척도를 통해 알아본 결과, 듣기에서 가장 높은 4.04(SD=.19)로 나타났으며, 말하기 3.99(SD=1.22), 읽기 3.95(SD=1.26), 쓰기 3.86(SD=1.27)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경우 대부분 어린 시절을 어머니의 본국에서 보냈기 때문에 한국어 실력에 비해 모국어 실력이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학교 수업 이외에 어떠한 교육이나 도움을 받았는지를 조사한 결과, 한국어 교육의 응답률이 28.9%로 가장 높았으며, 국어·영어·수학 등 학습지원이 15.3%, 문화체험, 예절교육 등의 한국 사회적응훈련이 12.5%로 조사되었다. 학교수업 이외에 교육이나 도움을 받은 개수는 1명당 2개 정도로 나타났다.

학교 수업 이외에 교육이나 도움이 필요한지 여부를 5점 척도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한국어교육과 학습지원이 3.78점으로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진로 상담 및 진로 교육이 3.77점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거주 기간은 3년 미만의 이주아동이 66.1%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시기는 한국 생활 적응 기간으로 한국어 교육이 가장 필요한 시기인데, 실제 이주아동들의 조사 결과 한국어 교육이 가장 많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형태별로 조사한 결과 일반학교에 102명(38.8%), 대안학교에는 103명(39.2%)이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규학교가 아닌 대안프로그램에 참석하고 있는 아동은 51명(19.4%),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경우는 7명(2.7%)으로 조사되었다. 즉 조사대상자의 21.1%나 되는 아동들이 정규학교에 다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학교를 다니지 않는 이주아동 중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중도에 학업을 포기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대안프로그램과 대안학교, 한국어를 몰라서가 25.3%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서류가 준비되지 않아서 13.3%, 아프거나 사고가 10.7%, 가정형편이 어려워져서 포기하는 경우도 9.3%로 조사되었다. 그 다음으로 부모의 이혼 등 가족문제 등의 이유로도 8.0%를 차지하면서 개인당 1.47개의 이유로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들의 대부분은 중도입국청소년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은 원활한 한국어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서의 수업을 따라 갈 수 없고 따라서 학교 진학을 포기하

거나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학교에 진학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준비되지 않아 학교 진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중도입국청소년 실태조사(양계민·조혜영, 2011)에서 나타난 것과도 동일한 결과로 중도입국청소년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학교진학 및 한국사회 초기적응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 체계 재정비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한국에 온 후 학교에 처음 들어가기까지 걸리는 시간에 대해 조사한 결과, 6개월 미만이 33.1%, 6개월 이상~1년 미만 32.0%, 1년 이상~2년 미만이 19.8%로 나타났으며, 평균 20.372개월(SD=22.74) 걸리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교별 만족도를 비교해 본 결과 일반학교에 대한 만족도는 64%, 대안학교는 63%, 대안프로그램은 78%로 나타나 대안프로그램의 만족도가 일반학교나 대안학교보다 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최근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한 이주아동의 피해경험을 조사하였다. 학교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있다가 16.2%, 없다가 83.8%로 조사되었다.

학교폭력을 경험했던 응답자들에게 폭력 유형을 조사한 결과, 말로 하는 헐박이나 욕설이 46.0%를 차지하였고, 집단 따돌림(왕따)과 강제 심부름 같은 괴롭힘이 각각 14.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개인별 평균 1.42개 정도를 당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교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경우 어떻게 대응했는지 방법에 대한 질문에서 선생님께 말씀드린다가 26.1%, 부모님께 말씀드린다가 15.9%, 친구들과 상의한다, 참는다, 그냥 넘어간다가 각각 13.0%로 조사되었다.

학교 선생님이 자신의 문화(나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학생이 느끼고 있는 바를 5점 척도를 통해 알아본 결과, 일반학교 선생님보다 대안학교와 대안프로그램의 선생님의 관심도가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나의 문화를 소개할 기회를 주신 적이 있다'에서는 일반학교 2.48점(SD=1.069), 대안학교 3.38점(SD=.877), 대안프로그램 3.13점(SD=1.079)로 많은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표 1〉 학교 선생님의 응답자 문화(나라)에 대한 생각

내용	학교유형			일반학교			대안학교			대안프로그램			합계		
	평균	N	표준 편차	평균	N	표준 편차	평균	N	표준 편차	평균	N	표준 편차			
나의 문화(나라)에 대해 관심이 있다	2,80	93	1,048	3,49	95	.784	3,44	48	1,109	3,21	236	1,017			
나의 문화(나라)를 잘 알고 계신다	2,83	92	1,055	3,17	96	.879	3,23	48	1,016	3,05	236	.990			
나의 문화(나라)에 대해 교실에서 언급한 적 있다	2,60	93	1,124	3,35	95	.796	3,13	47	1,055	3,01	235	1,042			
나의 문화(나라)를 소개할 기회를 주신적 있다	2,48	93	1,069	3,38	95	.877	3,13	45	1,079	2,97	233	1,074			
나의 문화(나라)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다	2,71	92	1,134	3,29	95	.909	3,17	46	1,141	3,04	233	1,080			
내가 또래들과 잘 지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다	3,16	93	1,106	3,49	94	.826	3,54	46	1,168	3,37	233	1,026			
내가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다	3,35	93	1,080	3,74	95	.802	3,78	46	1,031	3,59	234	.981			

희망하는 최종학력은 대학교가 47.4%로 가장 높았고, 모르겠다 15.4%, 고등학교 11.1%, 대학원 이상 13.0%로 조사되었다. 현재 학력에 따라서 대학교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비학생의 경우에서 83.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안학교 57.4%, 일반학교 45.4%로 나타났고, 대학원 이상을 희망하는 경우에서는 일반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20.6%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친하게 지내는 한국인 친구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있다 58.7%, 없다 41.3%로 조사되었다. 이는 조사대상자의 대부분이 한국인 친구를 사귄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 친구가 없는 이유로는 한국말을 잘하지 못해서 41.9%, 마음에 드는 친구를 만날 기회가 없어서 33.8%, 한국인 친구들이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이해해 주지 않아서 13.5%, 한국인 친구가 멀리해서 2.7%,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4.1%, 기타 4.1%로 나타났으며 개인별 1.3개 정도의 이유로 한국인 친구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건강상태 및 여가, 문화 실태

한국에서 아파서 병원에 간 적이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있다 69.6%, 없다가 30.4%로 조사되었다.

3) 선생님이 이주아동의 문화(나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사용된 척도는 “전혀 아니다-아니다-보통이다-그렇다-매우 그렇다” 으로 구성하여 조사함.

병원에 가지 않은 이유로는 금방 나올 듯하여가 40.9%로 가장 높았고, 가기 싫어서 24.7%, 돈이 없어서 9.1%, 보험이 없어서 8.1% 등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에 대해서는 보통이상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87.3%로 평균 3.65(SD=1.06)로 조사되었다. 성교육을 받아본 경험에서는 있다 59.4%, 없다 40.6%로 조사되었다.

금연 및 음주예방 교육 받은 경험은 있다 61.1%, 없다 38.9%로 조사되었다. 2012년도 청소년 흡연·음주 실태와 정책적 대응방안(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2) 연구에 따르면 일반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연간 흡연 예방교육은 받은 청소년이 54.1%, 음주 예방교육을 받은 청소년이 35.2%로 나타났다.

자살 충동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13-18세 연령대에서 한번이라도 자살 충동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경우가 28.6%로 가장 높았으며 19-24세가 22.6%로 조사되었다.

하루 평균 컴퓨터 게임을 하는 시간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하지 않는다 34.7%, 1~2시간 19.1%, 1시간 정도 18.4%, 3시간 이상 15.9%로 조사되었다.

요즘 고민이 되는 것을 묻는 질문에서는 성적, 적성 등 공부가 23.8%로 가장 높았으며, 용돈부족이 14.1%, 직업선택이나 보수 등 직업관련 고민이 7.9%로 조사되었다. 개인별 2.2개 정도의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민이 있을 때 주로 상담하는 사람으로는 어머니 31.6%, 스스로 해결 27.1%, 친구나 동료 25.2%로 조사되었다. 즉 이주아동이 고민상담의 대상으로는 어머니가 가장 많았지만 절반이상인 52.3%가 스스로 해결하거나 친구와 상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생님이나 상담전문가와의 상담비율은 3%로 매우 낮아 이주아동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가장 해보고 싶은 문화 활동으로는 여행이 27.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취미활동 23.6%, 놀이공원 20.9%, 영화 17.2%로 조사되었다. 개인별 1.76개를 하고 싶은 것으로 응답하였다.

여가 및 문화 활동을 하지 못한 이유에서는 시간 부족이 30.4%, 돈 부족이 28.9%, 함께 할 사람이 없음이 19.3%로 조사되었다. 개인당 1.47개의 이유로 문화생활을 하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

동아리활동 경험이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66.9%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33.1%가 없다고 응답하여 이주아동의 1/3 이상이 동아리활동 경험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노동 및 사회참여권

(1) 일 또는 아르바이트 경험

이주아동들의 일 또는 아르바이트 경험 조사 결과, 전일제는 15.6%, 아르바이트 경험은 32.1%로 나타났다.

한편 전일제 일을 해본 적이 있다는 15.6%, 아르바이트를 해본 적이 있다는 32.1%로 조사되었다.



전일제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나 했던 것을 알아본 결과, 전일제에서는 식당, 카페, 술집 등 서빙과 공장 등에서 일을 하거나 했던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아르바이트에서는 편의점, 카페, 전단지 배포 등의 일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일제 한 달 임금을 조사한 결과, 한 달 최저 평균임금이 997,63천원, 한 달 평균임금이 1,155천원, 한 달 최고 평균임금이 1,393천원으로 조사되었다.

아르바이트 임금에서는 시간당 최저 평균으로 5,260원, 시간당 평균 5,520원, 시간당 최고 6,350원으로 조사되어, 현재 2013년 최저임금(4,860원)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서 정규 교육기관 재학 중이 60.4%, 취업자격을 안돼서 9.2%, 진학준비 6.7% 등의 이유로 일을 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앞으로 일(아르바이트)을 할 의향이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있다 75.1%, 없다가 24.9%로 일 또는 아르바이트를 할 의향이 높게 조사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근로상황에서의 인권침해 경험

직장 내 인권침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양한 근로상황의 인권침해실태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은 경우가 21.7%, 계약시간보다 초과하여 일을 하거나 전혀 다른 일을 한 경우가 30.3%, 아르바이트 시작전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35.0%, 이유없이 해고당한 경우 18.4%, 작업 환경이 불결하고 위험한 경우 20.0%, 인격모독을 당한 경우 21.7%, 구타나 폭행을 당한 경우 9.6%,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한 경우 10.6%,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일한 경우 29.5%,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26.9%로 조사되었다.



〈표 2〉 근로상황에서의 인권침해 경험

(단위: 명, %)

내용	구분	빈도	백분율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은 경우	없다	83	78.3
	있다	23	21.7
계약시간 보다 초과하여 일을 하거나 전혀 다른 일을 한 경우	없다	76	69.7
	있다	33	30.3
아르바이트 시작 전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없다	67	65.0
	있다	36	35.0
이유 없이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경우	없다	84	81.6
	있다	19	18.4
작업 환경이 불결하고 위험한 경우	없다	84	80.0
	있다	21	20.0
인격모독을 당한 경우	없다	83	78.3
	있다	23	21.7
구타나 폭행을 당한 경우	없다	94	90.4
	있다	10	9.6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한 경우	없다	93	89.4
	있다	11	10.6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일한 경우	없다	74	70.5
	있다	31	29.5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없다	76	73.1
	있다	28	26.9

(3) 청소년 할인 적용 받지 못한 경우

학생증이나 청소년증이 없어서 청소년 할인 적용을 받지 못한 경우에서 있다 26.4%, 없다가 73.6%로 조사되었다. 즉 대다수의 이주아동들이 정규학교에 재학하고 있지 않고 있어 학생증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할인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국가에서 발급해주는 청소년증에 대한 정보가 없어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증을 발급받지 못하고 있거나, 외국인 신분이기 때문에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수 없어 할인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5) 한국생활-사회적 지원체계

(1) 한국생활 적응을 위해 희망하는 것

한국생활에 빨리 적응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것이나 희망하는 것 세 가지를 묻는 질문에서 한국어 교육(24.9%), 학비지원(13.7%), 직업기술 훈련 및 교육(12.1%), 주요교과목지도(12.1%)를 선택하였으며, 개인별 2개 정도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 내용을 보았을 때 한국생활 적응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한국어 교육과 학비지원으로 언어의 배움이 중요함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으로 진로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최근 1년 동안 진로경험

최근 1년 동안 진로에 대한 경험에 대하여 학교유형별 조사한 결과 대체적으로 대안학교와 대안 프로그램에 비해 일반학교에서 진로에 대한 경험이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진로경험은 수업 시간에 진로에 관한 학습(69.3%)으로 기초적인 학습과 부모님과의 대화(70.7%) 또는 선생님과 상담(60.8%)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1차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진로에 관한 프로그램을 참여(46.2%)하는 경우나 진로와 관련된 강연의 참여(52.0%)로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최근 1년 동안 진로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110명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 중 대안학교에서 63.2%, 대안프로그램에서 46.5%, 일반학교에서 33.0%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p < .001$)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일반학교보다 대안학교와 대안프로그램에서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참여가 높음을 알 수 있다.

(3) 원하는 지원프로그램

원하는 지원프로그램 세 가지를 선택하라는 질문에서 수준별 한국어교육(43.9%), 직업기술 훈련 및 교육(34.5%), 취미활동(40.9%) 지원을 선택했으며, 평균 2.25개를 선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원하지 않는 프로그램 참여 종류

다문화가정학생 또는 중도입국자녀라서 원하지 않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예절교육 24.6%, 다문화 행사 참여가 23.5%, 학습지도 23.0%로 조사되었으며, 기타 응답으로는 건강프로그램 참여가 있었다.

(5) 자신의 미래 전망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희망적 36.1%, 매우 희망적 29.6%, 보통 28.5%로 조사되었으며, 기술통계 결과는 평균 3.8723점(SD=.95413)으로 자신의 미래에 대해 희망적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번 조사에 응한 이주아동의 경우 자신의 미래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6) 인권실태 비교

(1) 학교폭력

학교폭력 경험에 대한 이주아동의 성별 조사에서는 남자아동의 경우 학교폭력 경험이 20.0%로 나타났으며, 여자아동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p < .05$)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자살충동 경험

연령별 자살충동 경험은 13세-18세에서 1.56(SD=1.068)로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으며, 19세-24세 1.40(SD=.852), 8세-12세 1.13(SD=.344)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유의수준 $p < .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자살충동 경험이 가장 높은 13-18세 연령대인 중고등학교 일반학교와 대안학교, 그리고 대안프로그램에 있는 이주아동들에게 자살 예방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3〉 연령대에 따른 자살충동 경험

구분	제공합	df	평균제곱	F값
집단-간	6,257	2	3,128	3,715
집단-내	223,981	266	.842	
합계	230,238	268		

* $p < .05$

사후검정결과, 8세-12세와 13세-18세 연령대의 평균차이는 -.424로 8-12세의 연령대에서 자살충동이 더 낮을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 연령대에 따른 자살충동 경험 집단간 차이 사후검정

(I) 연령대	(J) 연령대	Scheffe		
		평균차(I-J)	표준오차	유의확률
8-12세	13-18세	-.424*	.157	.028*
	19-24세	-.271	.170	.279
13-18세	8-12세	.424*	.157	.028*
	19-24세	.152	.127	.486
19-24세	8-12세	.271	.170	.279
	13-18세	-.152	.127	.486

* p<.05

(3) 가족유형에 따른 근로상황에서의 인권침해 경험

가. 가족유형에 따른 구타나 폭행을 당한 경우

가족 유형별 근로상황에서의 구타나 폭행을 당한 경우 중 한부모가정에서의 자녀가 구타나 폭행을 당한 경우가 2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한부모가정의 자녀가 양부모가정의 자녀보다 구타나 폭행을 당한 경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양부모가정의 자녀보다 한부모가정의 자녀가 학교 또래관계에서 피해를 더 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 가족유형에 따른 구타나 폭행을 당한 경우

(단위: 명, %)

구분	없다	있다	합계
양부모	64	3	67
	95.5%	4.5%	100.0%
한부모	28	7	35
	80.0%	20.0%	100.0%
합계	92	10	102
	90.2%	9.8%	100.0%

$\chi^2=6.264$, $df=1$, $p<.05$

나. 가족유형에 따른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한 경우

가족 유형별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한 경우 중 한부모가정의 자녀가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한 경우가 22.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한부모가정의 자녀가 양부모가정의 자녀보다 직장내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한 경우가 높은 것으로 보아 사회적으로 양부모가정의 자녀보다 피해를 더 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 가족유형에 따른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한 경우

(단위: 명, %)

구분	없다	있다	합계
양부모	63	3	66
	95.5%	4.5%	100.0%
한부모	28	8	36
	77.8%	22.2%	100.0%
합계	91	11	102
	89.2%	10.8%	100.0%

$\chi^2=7.565$, $df=1$, $p<.05$

(4) 학교유형별 근로상황에서의 인권침해 경험

가. 학교유형별 구타나 폭행 경험

학교유형에 따른 근로상황에서의 구타나 폭행 경험은 대안프로그램에 있는 아동이 31.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처럼 대안프로그램에서의 구타나 폭행을 당한 경험이 높은 결과는 대안프로그램에서도 체계적인 학교운영 시스템으로 이주아동들을 위한 한국어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성교육, 예방교육 및 상담 등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7〉 학교유형별 구타나 폭행을 당한 경험

(단위: 명, %)

구분	없다	있다	합계
일반학교	22	1	23
	95.7%	4.3%	100.0%
대안학교	54	3	57
	94.7%	5.3%	100.0%
대안프로그램	11	5	16
	68.8%	31.3%	100.0%
합계	87	9	96
	90.6%	9.4%	100.0%

$\chi^2=10.830$ $df=2$, $p<.01$

나. 학교유형에 따른 성희롱이나 성추행 경험

학교유형에 따른 근로상황에서의 성희롱이나 성추행 경험은 대안프로그램의 아동이 31.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볼 때 대안 프로그램에서 공부하는 이주아동이 직장 또는 아르바이트에서 더 피해를 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8〉 학교유형에 따른 성희롱이나 성추행 경험

(단위: 명, %)

구분	없다	있다	합계
일반학교	22	1	23
	95.7%	4.3%	100.0%
대안학교	53	4	57
	93.0%	7.0%	100.0%
대안프로그램	11	5	16
	68.8%	31.3%	100.0%
합계	86	10	96
	89.6%	10.4%	100.0%

$\chi^2=9.055$, $df=2$, $p<.05$

2 심층면접 결과

1) 이주아동 심층면접 결과 인권 이슈

- 재혼가정에 입양 또는 초청된 중도입국아동의 경우는 한국에서 새로운 가족관계의 변화를 힘들어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은 아동청소년기의 중요한 발달과업인 정체성 획득에 혼란을 가져오고 불안정한 일상생활과 미래의 불확실로 이어져 사회에 정착하지 못한 채 방황하게 되는 등 기본적 생존에의 위협을 야기하고 있다.
- 중도입국아동의 경우 성년의 나이가 되기 전에 국적취득을 해야 하는 국적권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
- 대다수 중도입국 자녀들은 10대 후반에 한국에 입국하게 되는데 새로운 가정과 사회에 대해 심리적, 문화적으로 매우 혼란한 상황 속에서 국적취득에 대한 생각을 할 여유가 없으며, 무엇보다 이들에게 체류권에 대한 적절한 정보제공을 해주는 곳도 없기 때문에 체류자격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국적을 취득하려고 할 때는 민법의 개정으로 만 19세가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이들의 체류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연령제한에 대한 검토 및 정책논의가 필요하다.
- 이주아동의 가족구성원의 변화를 살펴보면 심층면접대상자들의 경우 세 차례 이상의 가족구성원의 변화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아동들은 정서적 심리적 불안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재혼가정의 경우는 자녀가 대부분이 고등학교 학령기 및 그 이후에 처음 한국에 입국함에 따라 학교에 진학하는 것을 포기하기 때문에 이들이 원만하게 한국사회에 정착하도록 초기적응과

취업교육지원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친모가 일을 하고 아동을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에 아동이 계부로부터 성추행을 당하면서도 친모에게 무서워 알리지 못한 채 불안한 가정생활에 방치되는 케이스도 있어, 성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을 보호하며 상담해 줄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
- 이주아동들은 대부분 가정의 경제적 이유에서 취업 욕구가 높고 일자리 소개나 직업기술훈련 등과 같은 취업지원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진로상담이나 진로교육, 직업기술훈련 기회가 없으며 이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부모의 인권 이슈

- 부모가 가장 크게 경험하는 어려움으로는 주거공간의 마련과 생계유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이혼가정의 경우 대부분 이전 배우자나 가족으로부터 위자료나 양육비 등의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낮은 한국어실력으로 특히 정부의 기초수급 혜택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 현행 제도 하에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이혼 후에도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거나 배우자의 귀책 사유를 입증할 경우, 한국사회 거주를 인정받을 수 있으나 자녀가 없고 국적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한국에서 체류하고 싶지만 체류자격이 보장되지 않아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다.
- 이혼한 여성의 경우 당장의 의식주 해결을 위해 직장에 다녀야 하기 때문에 한국어 교육을 받을 수 없고,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거주하기를 희망하지만 국적취득에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안전한 체류권을 보장받지 못한 상태이다.
- 국적취득이나 영주권 취득에 관한 정보를 알기 어려워 일반 학원에서 만들어진 정보를 가지고 공인된 정보로 오인하고 있으며, 막상 출입국사무소에 문의를 하면 원하는 정보를 편하게 얻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 이주여성이 법적 이혼 후 남편에게 면접권을 허용할 때 남편은 성적인 요구를 하며, 성적인 요구를 받아들일 때 양육비를 주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IV. 정책방향 및 과제

1 정책의 방향

첫째, 이주아동에게 ‘평등한 권리’ 를 보장하기 위해 ‘이주아동권리보장법’ 의 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주아동권리보장법은 이주아동의 권리 보장 및 보호를 위해 지난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이었으나 최종적으로 폐기가 된 상황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에 대해 실질적인 적용대상의 규모에 대한 조사,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고, 하나의 법률에 아동의 권리에 관한 여러 부처 소관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부처 간 업무조정과 협조의 필요성이 높다고 보았다. 정부에서도 입법을 시도했던 바 있는 ‘이주아동권리보장법’ 의 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⁴⁾

둘째, 이주아동과 일반아동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앞으로 이주아동의 인권정책은 보편적인 아동정책의 테두리 안에서 이주배경을 지닌 아동들이 주류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균등한 권리를 가지고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방향을 가져야 할 것이다(이민경, 2012; 174-176). 이러한 관점에서 앞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른 국가의 이행여부에 대한 평가 시 이주아동 관련 모든 이슈가 주류화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이주아동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는데 있어 ‘단계별 특성’ 을 고려해야 한다.

이주아동의 ‘단계별 특성’ 이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선 이주아동의 ‘입국시기별 단계’ 를 고려하여 중도입국청소년의 경우 국내 입국초기에는 언어교육이 최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단계별 특성’ 의 두 번째 의미는 ‘생애주기별 단계’ 를 의미한다. 즉, 발달단계에 따른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주배정청소년에 대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이주아동의 선택권을 보장하며 귀화 및 영주권 선택이 결정되기 전까지 안정적인 체류권을 보장한다.

연구결과를 보면 한국 국적 취득과 관련하여 모른다고 대답한 경우는 아동자신의 결정과 상관 없이 부모님이 원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본국으로 돌아갈지 한국에서 정착할지에 대한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기존의 이주아동 및 결혼이주민에 대한 사회통합정책이 귀화 위주인 것에 비해 이주아동의 선택권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을 시사해준다.

4) 현재 이자스민의원실에서 ‘이주아동권리보장법(안)’ 을 다시 준비 중에 있다.

2 정책과제

1) 이주아동의 체류 및 국적 취득 관련 정책 과제

현행 출입국관리법시행령이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업무지침에 따르면이라도 3)항에 해당하는 외국인 자녀의 체류가능성은 있다. 그러므로 이주아동의 인권 보장 및 가족결합권의 보장을 위하여 시행령에 명시적으로 '외국인 자녀가 부 또는 모와 동거하기 위하여 미성년일 때 한국에 입국하였다가 성년이 되었어도 F-1 체류자격을 연장해 줄 수 있도록 입국시점부터 3년의 시간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2) 이혼 후 면접교섭권만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체류자격 보장과제

면접교섭권만을 가진 결혼이주여성의 경우는 이들에게 국적을 부여하는 문제보다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체류를 보장하여 면접교섭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현실적으로 바람직할 것이다.

즉 미성년 자녀가 부 또는 모와의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접교섭권을 가진 결혼이주여성이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별도의 체류자격을 취득할 필요가 없이 취업이 가능한 F-6 체류자격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명문 규정을 두고(현재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내부 지침에 따라 보장), 이후 국적을 취득할 지 여부는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여 한국에 체류하는 기간이 5년 이상이 되는 경우 일반귀화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

3) 다문화가정의 해체로 외국인 부 또는 모가 자녀를 데리고 일방적으로 본국으로 돌아가 버리고 연락이 두절되어 또는 한국인 부모 또는 모가 아이들을 찾을 길이 없어 양육권이나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한 과제

국제결혼과 이혼이 증가함에 따라 상기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협약에 가입하고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을 2012년 12월11에 제정하였다. 앞으로 이에 따른 후속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중도입국청소년을 위한 여가부와 법무부의 프로그램 연계 및 이수 인정 방안

법무부와 여성가족부가 협력하여 레인보우스쿨 이수자에 한해서 사회통합프로그램 단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단, 이때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준하여 80% 이상 출석을 해야 한다.

5) 관련 판결내용은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 도 14328 전원합의체 판결<국외이송약취, 피약취자국외이송>(공2013하, 1399)를 참조할 것.



5) 공교육에의 접근 가능성 확대 및 진로지도를 위한 다문화 코디네이터 활성화

이주아동 공교육 진입을 위하여 이주아동의 접근도가 높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다문화코디네이터를 배치하고, 다문화코디네이터의 양적 확보와 함께 이중언어 가능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며, 이들의 전문성 강화와 적극적인 홍보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또한 결혼이주민의 경우 아동 ‘동반여부’ 를 확인하여 동반 아동이 있을 경우 교육부 및 여가부의 학교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보접근성을 제고해야 한다.

6) 이주아동들의 교육 탈락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시스템 마련

이주아동의 교육권 이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주아동을 국가의 소중한 국가의 인적자원임을 인정하고 학교-가정-지역(국가)의 3자가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파트너십으로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 소외 계층인 이주아동의 실질적인 교육 접근성을 강화시키고, 그들의 잠재능력을 개발하여 새로운 인재군으로 발굴하기 위해서는 총체적인 접근으로서 학교와 가정 그리고 국가가 책임져야할 각각의 몫을 담당할 수 있는 체계적인 법적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7) 노동권 보호를 위한 노동권 교육 및 직업훈련의 제공

학교진학의 어려움과 소비에 대한 욕구, 가정의 어려움 등이 맞물리면서 중도입국청소년들의 근로에 대한 욕구는 매우 높아 단순한 육체노동에 불과한 아르바이트에 전념하거나 불법 근로를 하는 경우도 많다. 시간제근로에 관심이 많은 10대 후반 이주아동에게 올바른 근로의식을 심어주고, 근로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부당대우 및 노동력 착취에 대한 폐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노동권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단 노동권 관련해서는 연령에 따른 대상구분이 필요하다. 즉 한국은 ILO 협약 중 제 138호 최저연령협약(1999년 비준)과 제 182호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협약(2001년 비준)에 가입하였으므로 노동권보호는 주로 19세 이상에게만 적용된다.

노동권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여성가족부의 무지개학교나 대안학교 등 초기적응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에서 근로교육을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아르바이트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의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전경숙 외, 2012: 216). 또한 일시적이 아닌 장기적인 안목에서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일할 수 있도록 이들이 단순노동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훈련과 직업훈련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해야 한다.⁸⁾

20) 취업최저연령은 어떠한 경우에도 15세미만이어서는 안됨

7)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가혹한 노동금지 내용임.

8) 국가인권위원회, 2011, 이주인권가이드라인 참조

9) 국가인권위원회, 2011, 이주인권가이드라인 참조.

8) 결혼이주민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영유아보육법’, ‘모자보건법’ 등에 대한 정보를 결혼이주민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에 통역을 제공하는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 구축⁹⁾

한부모가족의 생계와 주거지원을 위하여 관련 정보 접근도를 높이고,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인 관리와 단계적인 안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이주여성의 접근도가 높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이에 관한 홍보자료를 다국어로 번역하여 비치하고, 의사소통이 어려운 자를 위하여 통역을 확대하여야 한다. 또한 다문화코디네이터를 양적으로 확대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상주하여 다양한 사례를 관리하며 안정적인 생계와 주거가 될 수 있도록 간단한 생활경제교육과 더불어 다양한 정보를 안내해야 한다.

특히 지역사회 정보를 잘 아는 이·통장들을 복지안내자로 활용하거나 동사무소의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다문화 관련 실무자들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생계지원이나 주거지원 정보를 제공하며, 단계적으로 관리, 지원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참고문헌〉

강현하(2009). 이주노동자 자녀의 사회권에 대한 논쟁. 아동과 권리, 13(1), 59-87.
결혼이주민의 체류권 보장을 위한 연대모임(2011). 결혼이주민의 체류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곽한영(2010). 다문화 교육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헌법상의 교육권 개념을 중심으로. 법교육연구 제5권 제1호, pp 01-26.
국가인권위원회 (2011).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2011). 이주아동 교육권 현황 및 개선방안 토론회 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2012). 2012~2016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국가인권위원회(2012). 이주노동자 미취학 자녀의 양육환경 실태조사 보고서.
권용진·임영덕(2011). 미등록 이주아동 의료접근권에 관한 고찰. 고려법학 제63호.
김두년(2013). 결혼이민자의 체류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법학연구, 49, 325-347.
김성천(2010). 미등록 이주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적 방안에 관한 연구. 중21세기사회복지연구, vol.7, No.1, 5-34.
김성천 외(2008). 미등록 이주아동의 권리에 대한 실태조사. 보건복지부·중앙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김아영(2011). 혼인이주여성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 혼인과 이혼에서의 쟁점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영화(2010). 다문화관련 정책용어 개선과 제안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유경(2012). 한국에서 다문화가족의 혼인, 출생, 자녀의 추이에 대한 통계적 고찰 및 주산기 정책 전망. 大韓周産醫學會雜誌.
김유경·최현미·김가희·성수미(2012). 다문화가족의 변화와 사회적 대응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지은(2013).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체류 실태와 법적 대안 연구 : 행정소송 판결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대학원.
김혜순(2010).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이민정책연구원토론회자료집
노충래(2012). 헤이그 입양협약과 관련된 아동복지의 과제. 아동권리학회, 16(2), 309-340
류방란·오성배(2012). 중도입국 청소년의 교육 기회와 적응 실태. 다문화교육연구, 5(1), 29-50.
류방란·오성배·박균열·송인영·박지은(2011).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패러다임 구축(V): 외국출생 동반입국 청소년을 위한 교육복지 정책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한국교육개발원.
모상현 외(2009).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 생존권, 보호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무지개청소년센터(2011). 이주배경청소년 백서. 서울: 무지개청소년센터.
- 박귀천·이유봉(2012). 출입국관리법과 국적법 개선에 관한 연구: 외국인노동자, 이주여성 및 이주아동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 박진근(2010). 다문화가족의 특수한 해체(이혼)원인과 친권양육권의 결정. 한국법정책학회 법과정책연구. 제10집 제2호.
- 사단법인 한국이주민건강협회(2010). 이주아동청소년 건강권 증진을 위한 심포지엄.
- 서문희·설동훈·최윤경·김은경·조혜주(2010). 다문화가족 자녀 양육지원방안: 영유아·초등학생·중도입국자녀를 중심으로. 여성가족부·육아정책연구소.
- 석원정(2012). 이주민 120만명 시대의 사각지대·이주아동의 교육권. 복지동향.
- 설동훈·한진수·이란주(2003). 국내 거주 외국인노동자 아동의 인권실태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성상환·김명정·배화순·이윤주(2010). 다문화가정 동반·중도입국청소년 교육수요 및 지원방안 연구. 교육부.
- 송연숙(2010). 이주배경 청소년의 교육지원현황 및 정책과제 자료집. 제주인권회의사회권과 돌봄·나눔의 공동체.
- 송연숙·김재우(2011). 중도입국 청소년 초기적응 프로그램 시범운영·중도입국청소년 현황 및 과제 진단 토론회 자료집. 53-61.
- 송효진(2012). 다문화가족의 해체에 따른 아동 보호의 문제. 가족법연구. 26(2), 1-36.
- 신은주(2013). 이주아동의 교육지원 방안연구. 청소년시설환경. 11(1), 67-78.
- 신현옥 외(2012). 이주배경청소년의 유형별 실태와 정책과제. 여성가족위원회.
- 양계민·조혜영(2011a). 중도입국청소년 실태조사 연구. 서울: 무지개청소년센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1b). 중도입국청소년 지원정책 개발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 오경석·양계민·조성원·유성환·조윤희·정혜실·이장혁(2009). 다문화이동청소년 초기적응 프로그램 개발방안연구. 서울: 무지개청소년센터.
- 오성배·정의철·최성희(2007). 소수집단 청소년들의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오성배(2009). 외국인 이주노동자 가정 자녀의 교육 실태와 문제 탐색. 한국청소년연구. 20(3), 305-334.
- 유진이(2013). 중도입국청소년의 초기적응 지원방안 연구. 2013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춘계학술대회.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 이민경(2012).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정책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대안 모색: 가족과 교육 아젠다를 중심으로. 한국교육학연구. Vol.18, No.3, 157-182.
- 이상미(2010). 교육권 실태로 본 국내 이주아동·청소년복지현황, 이주아동·청소년 건강권 증진을 위한 심포지움. pp. 32-39.
- 이혜원(2010). 이주아동의 교육권 실태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임현진·김현신·안지선(2012).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I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장혜림·김성천(2009). 한국의 미등록 이주아동의 권리문제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아동권리학회. Vol 13, No.2, 203-225.
- 전경숙·이의정 (2012). 다문화가정 중도입국 자녀 초기적응 지원방안 연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전기택 외(2013).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여성가족부.
- 전민경(2012). 중도입국청소년의 초기적응 지원사업에 관한 내러티브 연구. 평택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병호 외(2011).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 정상우(2008). 이주아동의 기본권보장에 관한 연구. 법제연구 제34호. pp. 309-345.
- 조규범(2011). 다문화사회를 위한 입법적 대응방향. 현대사회와 다문화. 1(1), 34-64.
- 좌동훈(2012). 중도입국청소년의 사회문화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경옥(2012). 한국에서의 다문화가정 아동의 교육권. 공법학연구. 제13권 제1호. 307-339.
- 최상진·김은미·차영란(2006). 이혼사유자의 사회적 구성: 사회적 통계와 언론보도 내용의 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2008). 결혼이주여성 인권백서 적응과 폭력 사이에서: 결혼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상담사례모음.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 현병철(2011). 이주아동의 인권증진을 위한 심포지엄 자료집.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토론문

이주아동의 인권현황과 정책과제

(경기도를 중심으로)

신상록 (함께하는 다문화네트워크 이사장)

2013년 이주민 160만 시대를 맞아 이주민 유형의 다양화에 따른 정착과정에서의 갈등과제가 여러 형태로 표출되고 있다. 그 중 다문화배경을 이주한 청소년들의 인권문제는 사회통합에 매우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한다. 특히 중도입국자녀의 사회정착은 가족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자원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과제이다. 중도입국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은 미래 우리사회가 감당해야 할 사회적 비용 측면 뿐 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인권을 존중받고 행복을 추구할 가치를 국가가 지켜주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그러한 면에서 신은주교수의 ‘이주아동의 인권현황과 정책과제’는 이주민을 단지 ‘인력’으로 여기거나 ‘수단’으로 대하기 쉬운 현실에서 ‘인권보호’라는 ‘인간의 고귀한 가치를 존중받아야 할 자’로 환기시켰다는 점에서 평가받아야 한다.

본 논문은 재혼가족과 귀국자녀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중도입국자녀의 증가와 연계되고 있고, 자녀들이 겪는 체류자격불안, 언어소통과 관련, 공교육진입의 어려움, 그에 따른 장기간의 칩거, 서류미비로 인한 공교육진입 실패 등 이미 잘 알려진 문제들을 재한외국인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 지원법, 그 밖의 유엔이 정한 아동의 권리협약과 현 교육정책 등에 근거하여 문헌 및 양적 연구와 질적연구 그리고 관련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 다양하고 체계 있는 연구를 시도 하였다.

본 논문을 통해 이주청소년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고충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다. 중도 청소년의 경우 본국의 학적을 인정받는 과정에서 서류미비로 인한 대사관의 공증거부와 국내 공교육기관의 접수거부, 한국어 능력부족으로 인한 취학실패, 취학 했을 경우에도 낮은환경 적응과 청소년기에 흔히 겪는 정체성 문제가 있으며, 사회 진출을 통한 물질욕구도 매우 강하다.

1) 신상록 (이민정책자문위원, 외국인정책위원회 실무위원, 경기교육청다문화정책자문위원)



그러나 필자가 제안하는 정책방향과 정책과제는 질적 연구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이주아동에게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주아동 권리보장법’의 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만 논문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이주아동이 겪는 문제는 ‘언어소통과 관련한 취학실패’와 ‘공교육진입에 필요한 학력인증서류미비’ 외에는 우리 청소년들이 겪는 문제와 크게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 청소년들도 ‘외로움’, ‘왕따’, 아르바이트과정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이주 청소년들의 인권문제라기 보다는 행정절차상의 민원문제에 해당한다.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법이나 규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주 청소년과 우리 사업자가 법과 규정을 지키지 않은 측면이 있다. F-1이주 청소년의 경우 직장을 다니면 추방당할 수 있고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교육해도 몰래 다니거나 숨어버리는 경우도 있다. 또한 사업자에게 청소년을 고용하지 말라고 해도 일손이 부족해서 지키지 않는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적과 영주권을 주는 외국인 출입국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철저히 하고, 우리국민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이주아동의 학력을 평가하는 제도를 조속히 시행하여야 한다. 본국에서 학적을 인정받기 어려운 학생들의 교육인권 실현을 위해 시급히 시행해야 한다.

둘째)

이주아동에 관한 ‘단계별 특성’ 지원으로 ‘생애주기별지원’ 제안은 현재 여가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다문화가족을 국민가족으로 편입시키기 보다는 별도의 가족 형태로 돕으로서 평생 동안 시혜대상으로 여기겠다는 것인데 이는 매우 우려할 방향이다. 외국인처우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국적취득 후 3년 지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본다. 필요하다면 우리국민이라는 동등한 입장에서 지원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역차별 등 국민의 이주민에 대한 차별적 시선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이주민이나 이주 청소년이 바라는 것은 국적에 맞는 시민으로서의 정치적·법적 지위를 인정받는 것이다. 새터민의 경우 지원금을 받기위해 4대보험이 인정되는 직장을 기피한다고 한다. 그래서 스스로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주류사회에 당당한 주역으로 진출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결혼 이주민이나 중도입국자녀를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셋째)

이주아동의 국적 또는 영주권 취득 또는 본국 귀국 선택권은 부모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었으므로 스스로 결정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은 심사숙고할 일이다. 청소년 시기는 스스로 자기 미래를 결정할 정도로 성숙하지 못했다.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의 경우 본국으로 돌아가려는 경향

을 보이는데 이는 가족 해체라는 또 다른 문제를 낳는다. 당장 눈앞의 문제보다는 먼 미래를 보면서 결정하도록 돕는 지혜가 필요하다.

마치며)

본 논문의 성과는 이주청소년들의 삶의 과제를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조명했다는 점이다. 중도 입국청소년들의 교육은 공교육보다는 대안교육이 더 큰 대안이 될 수 있으나 개별적인 인권보호에는 매우 취약하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학생들이 희망하는 세 가지는 ‘한국어 교육’, ‘학비지원’, ‘직업 교육 훈련’임을 알 수 있었다. 현재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이나 여가부의 ‘레인보우스쿨’ 그리고 교육부의 ‘다문화 거점학교’, ‘예비학교’, 교육청의 ‘위탁형 다문화대안학교’ 등이 학생들의 욕구를 채워줄 대안이라고 본다. 그 외에도 학생들의 적응을 위해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도 다양한 형태의 대안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대부분 무료이거나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다. 다만 직업교육과 훈련의 경우는 노동부와 교육부 그리고 법무부가 연계하여 설립한 ‘성동고교에 있는 다솜학교’, ‘폴리텍대학 다솜학교’를 통해 해결할 수 있으나 그 수가 매우 적고 다양한 욕구를 채워주기에는 부족하여 전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국적취득이후 직업을 갖고자 할 때는 전국 지역에 있는 고용지원센터에서 상담 및 직업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다만 영주권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국가에서 실시하는 외국인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거의 무상으로 실시된다는 점에서 영주권자에게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토론문

이주아동의 인권현황과 정책과제

- 고려인 동포 중도 입국 자녀를 중심으로

김승력 (고려인 야학 너머 대표)

발제와 같이 한국의 다문화 정책은 결혼이주민들의 안정적 한국정착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주 아동의 문제도 이 테두리 안에서 주로 고민되고 있다.

별써 3만여명을 넘고 있는 국내체류 고려인 동포들의 경우 결혼이민자 형태보다는 이주노동자 신분으로 체류하고 있어 한국에서의 지속적인 체류와 생활이 거의 불가능하다. 대부분 H2(방문 취업)와 F4(동포) 비자를 통해 한국에 입국해 3D 산업현장에서 일하고 있으며 불안정한 체류 문제로 일부는 단속되어 추방되거나,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기도 하기도 한다.

국내 최대 밀집 거주 지역은 안산으로 땃골 (선부2동)에만 약 2000여명이 집단촌을 형성하며 거주하고 있으며 안산 각지에 사할린 동포 포함 약 500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대부분 시급 4860원 최저임금을 받으며 인력업체를 통해 인력부족 공단지역에 파견노동자로 일하고 있으며, 한국어를 구사할 수 없어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의료보험 등 다양한 국내체류 문제에 노출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정부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다문화 정책은 결혼 이주민 중심으로 고민되고 있으며 외국인 노동자 정책(E9비자)은 민족정체성 문제를 다루지 않고 산업인력확보에만 집중되어 있어 고려인 동포가 갖는 특수한 역사 문화, 민족적 정체성이 전혀 반영 안 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

부모를 따라온 일부 중도입국 아이들도 열악한 거주 환경, 언어 및 교육, 이산 문제 등에 노출되어 있다. 대개 부모들이 먼저 들어와 일을 하다 형편이 닿는 대로 자녀들을 불러들이는데 불안정한

체류신분으로 인해 2년에서 3년 최장 5년 후에는 본국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어 부모들의 자녀 교육 입장도 결혼이민자들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 ① 중앙아시아 교육 과정으로의 재 진입을 위한 임시교육 고민 형태
- ② 체류불안정과 언어문제로 인한 초 중등학교에서의 입학 기피 문제
- ③ 열악한 생활, 노동 환경 문제로 인한 아동 방치 문제 등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한국에서의 비자 기간이 끝나면 다시 중앙아시아로 돌아가야 하므로 중앙아시아에서 교육기간을 인정 받을 수 있는 정규 러시아어권 학교를 찾지만 교육기관 자체가 국내에 거의 없고 한두 군데 있다해도 외교관이나 지상사 자녀들을 위해 운영하고 있어 교육 비용이 너무 비싸 동포들이 입학하기엔 많은 제약이 있다.

고려인 동포들은 대안으로 러시아 선생님 자격을 갖춘 이주 노동자 에게 과외형태의 사교육을 진행하기도 하고 정규 러시아과정 학교라 홍보하는 가짜 사설 러시아 교육기관에 보내 문제가 되기도 한다.

또한 한국의 정규교육을 원한다 하더라도 부모와 아이들 모두 한국어를 거의 구사할 수 없어 입학 절차를 스스로 진행하기 어렵고 한국의 교육기관 또한 교육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이유로 입학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이마저도 쉽지 않다. 그래서 한국생활을 하는 몇 년간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방치하는 상황도 발생하게 된다.

너머에서는 임시방편으로 지역 글로벌센터 등 이주민을 위한 한국어 교육기관에 아이들을 보내고 있지만 단순 언어교육 밖에는 받을 수 없고 갑자기 받을 새로 편성하기도 어려워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 너머에서는 현재 이주 노동자 중 러시아선생님 자격증을 갖춘 분들을 찾아 교육협동조합을 꾸려 이분들의 임금을 보장하고 아이들에게 한국어 교육과 함께 러시아어권 정규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려인 동포로서 건강한 한민족 정체성이 정립될 수 있도록 문화활동과 탐방활동 등을 벌여나갈 계획이지만 시민단체로서의 한계가 있어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것도 현실이다.

한국사회에서 사각지대에 거의 완전히 소외되어 있는 고려인 동포들과 중도입국 자녀들을 위해 모국 정부와 관계기관 시민사회 모두의 지혜와 협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토론문

이주아동의 인권현황과 정책과제

강은이 (안산 we start 글로벌아동센터장)

보통의 이주배경 아동들은 이주의 주체인 부모를 둔 한국에서 출생한 아이들을 많이 다루는데 본 발제를 통해 아동 또는 청소년이 이주의 주체가 되었을 때의 적응상황과 정책과제를 다루어 준 부분에 있어서 매우 의미 있는 주제였고 충실하게 다루어 주신 발제자님께 감사를 드린다.

최근 본 센터가 위치한 안산시에도 중국(중국동포 또는 한족)을 중심으로 한 이주아동·청소년들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고려인 동포를 중심으로 한 러시아권역의 이주아동·청소년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대부분은 미성년자녀로서 가족동반비자로 입국하지만 동포들의 근로비자 유형에 따라 단기비자로 함께 입국하여 생활하는 중도입국 아동·청소년들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본 센터에서 운영 중인 발제자께서 분류한 대안프로그램인 ‘레인보우스쿨’의 경우 급격히 증가되는 아이들을 위해 추가반을 신설하고도 여전히 많은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찾아오고 있고 일부 아이들은 일정기간 대기해야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는 상황과는 달리 지역사회 차원의 정책이나 인식 등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준비되어 있지 못하다. 일례로 올해까지 경기도에서 지원해준 중도입국청소년 적응지원 사업의 예산은 2014년 60% 가까이 삭감될 예정이다.

발제문에서 많은 이주 아동과 청소년들의 어려운 상황들을 다루어 주셨는데 본 토론문에서는 정책제언에 앞서서 재혼가정 등을 중심으로 한 본국의 원자녀인 중도입국 아동·청소년들을 중심으로 그 동안의 경험을 통한 아이들의 상황을 부연 설명하고자 한다.

1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체계화된 교육시스템 부재

- 학교로부터 입학할 거부당하는 사례가 빈번함.
- 중도입국 청소년의 경우 학교적응 실패에 따라 중도탈락률이 높음.
- 이에 불완전한 노동시장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음.

2 차별로 인한 정체성 문제

- 지역사회 안에서 부정적인 주목을 받음. (문화적으로 같은 나이이지만 성숙도의 차이)
- 이러한 시선들은 중도입국 청소년에게 상처가 되고 사회통합 및 적응 저해를 유발함.

3 가정으로서의 역할 부재

- 대부분의 중도입국청소년의 가정은 재혼 또는 재재혼으로 이루어진 가정이 많아 아동이 심리·정서적 안정을 가정에서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이러한 가족구조는 가정이지만 가정으로서의 소속감을 주지 못하고 심리정서, 신체적 방임과 심각한 학대를 유발시킴.
- 재혼한 엄마의 경우 원자녀를 데려올 때 어쩔 수 없이 데려온 경우들이 있고 이복동생과의 사이에서의 차별을 경험하거나 자신이 필요없는 존재로 여겨지는 경우가 빈번함.
- 또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급급하여 정작 중요한 자녀들의 육구나 필요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관심 갖기가 힘들며 가족해체가 점점 증가하고 있음.

4 미래청사진과 계획에 대한 동기 저하

- 중도입국 청소년의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높고 진로성숙도가 낮음.
- 자녀의 꿈에 대해 부모의 관여가 크지 않음.
- 자녀들의 꿈이 자신들의 형편을 대변하고 있어서 ‘제한적’ 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중도입국 청소년들이 꿈을 ‘구체적’ 으로 가질 수 있도록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절실.
- 자신들이 제공하는 직업세계의 제한점을 잘 알고 있고, 자녀들의 꿈이 크길 원하지 않는다. 미리 실망하거나 ‘허황되다’ 고 생각하기 때문.
- 대부분의 중도입국 청소년과 그 부모들은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이 기술직 또는 생산직이라고 미래를 한정짓고 있음.



5 처지에 맞춰지는 꿈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직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막연히 비용이 많이 들거나, 경쟁률이 치열해 보이기 때문에 자신의 꿈을 시도할 해보기 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음.

또는 부모님의 반대와 우려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동의 적성과 상관없이 돈을 많이 버는 직업, 한국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직업, 안정적인 직업을 권하여 아동이 그러한 의견을 수용하는 경우가 많음.

6 혼자 꾸는 꿈

부모님과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해 본 적이 없고, 장래희망에 대해 솔직하게 의논하기 어려우며, 자신이 원하고 되고 싶은 것에 대해 의논할 상대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들은 아동이 꿈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어른들의 도움을 받아본 적이 없거나,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

7 언어에서 오는 스트레스

- 중도입국 청소년의 대부분이 입국 초기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호소. 한국어를 배우고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한국 사람과 접할 기회가 거의 없고 거리에서 만난 한국 사람들의 말은 너무 빠르고 “이상해서” 알아듣기 힘들어 함. 중도입국청소년들에게 한국 생활은 “안 익숙하고” “위험한” 것으로 인식.
- 길도 잘 모르고 사소한 일상생활도 원활히 수행하기 어려운 낯선 환경 속에서, 중도입국청소년은 학교에 진학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

8 발달단계별 다른 고민과 혼란

- 학령기를 벗어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중도입국청소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접근이 필요.
- 이들은 학령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정규학교에 진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학업 중단 상태로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근로 자격요건에 미충족 됨.
- 더욱이 언어소통이나 사회문화적 소통이 어려워 자신에게 맞는 적성을 찾거나 다양한 직업에 대한 정보를 얻기도 어려워, 단기 또는 임시의 아르바이트와 미숙련 노동시장에 유입되고 있는 현실.
- 한편 성년의 나이를 앞둔 아이들은 모든 문화, 사회 프로그램을 통한 교육과 훈련을 뒤로 미루고 오로지 사회통합이수와 국적취득에만 몰입해야하는 상황으로 자신의 연령에 필요한 적절한 발달과정에 결핍이 발생하게 됨.

총 40여명의 중도입국 아동·청소년들과 1년 이상 함께 해온 시간들에 대한 이러한 경험치들은 발제문에서 다루어주신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우리는 이러한 아이들의 고민과 눈물과 어려움을 실제 현장에서 매일 부딪히며 함께 접하고 있다는 것이다.

발제문에서 보면 대안프로그램의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온 것을 볼 수 있는데 미루어 짐작하건데 그러한 결과들은 아이들의 한국어 습득이나 지식적인 부분의 증가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고민과 어려움이 얼마나 수용되고 또 그것을 들어줄 준비가 되어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느냐가 아닐까 생각된다. 나아가 그 원인이 되는 요인을 분석하여 지역사회에서 또는 공교육에서 적용 가능한 부분을 찾아 제시해줄 필요 있을 것이다.

발제자께서 교육, 진로, 복지 등 다양한 차원에서의 제도 및 정책적 제언을 해주셨는데 모든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하는 바이다.

- 큰 틀에서 우선적으로 이주아동권리보장법이 제정되어야 함에 적극 찬성한다. 본 토론자 역시 현재 관련 네트워크 운영에 참여 중에 있는데 한번 폐기 된 전례가 있는 만큼 실질적인 여론과 인식제고를 위해 다양한 영역에서의 선언적, 실제적 동참이 필요한 시점이다.
- 일반아동 통합적 접근 필요성 찬성한다. 발제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반학교의 경우는 그것 자체가 자연스러운 통합의 과정이다. 본 센터에서도 1차적 목적이 최대한 빨리 공교육에 편입되는 것이지만 아이들은 언어적 준비성 이전에 심리적인 준비에 있어 거부감이 크다. 결국 아이들이 일반학교로 진학할 수 있는 문턱을 낮추기 위한 대안이 필요하고 학교가 이 아이들을 교육적으로 심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
- 특히 고등학교의 문턱은 더욱 높은데 대학입시체제인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 진학은 사실상 어려운 요소들이 많다. 현재 특성화 고등학교의 외국인전형 비율을 높여서 아이들이 다양한 특성화 고등학교를 탐색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것도 하나의 실제적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 발제문에서 제시해 주신 교육탈락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법적시스템이 무엇 을 말하는 것인지에 대한 모호함이 아쉽다.
- 가정형편이 어렵고 가족해체, 가족갈등, 학대와 폭력, 심리적·신체적 방임 등의 발생요인이 높다면 지역사회단위에서 지지체계를 강화하고 예방적 접근이 필요한데 여기에 선결조건은 문화적 감수성과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는 지식일 것이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청소년기로 부모와의 관계에 갈등이 많다. 그렇다면 어떠한 사람들이, 어떤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 결함과 결핍을 채우고 더 나은 성장을 이루도록 도울 것인가.

어떤 전달체계가 필요할지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고민이 이후에 이루어지길, 더불어 사회복지적 관점에서의 접근을 기대해본다.

- 국적취득이 10대 후반 이주청소년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발제자님의 제안처럼 성년이전 조건에 이주 후 3년 이내 중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들이 필요하다.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이 아이들은 이주의 주체이다. 하지만 어른들의 상황에 따라 자신들의 의견과 권리, 인권에 대한 선택권 없이 이주한 아이들이 대부분이다.

이 아이들 역시 똑 같이 소중한 존재로서 자신을 인식하고 건강하게 꿈을 꿀 수 있고, 자신이 꿈꾸는 것을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이 아이들 역시 우리가 훌륭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시켜 우리사회를 이끌어가도록 지원하는 노력과 고민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정책에 반영되기를 바란다.





경기도외국인정책 간담회 및 지원단체 활동가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